

法學碩士學位論文

Typeface의 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1997년 8월

서울대학교 大學院

法學科 知的所有權法專攻

韓 志 咏

국문초록

루이스 칸 건축의 공간 구축 방식에 관한 연구

-에일대학 영국 미술 센터의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현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한지형

본 연구는 루이스 칸의 건축에 있어서 공간 조직 논리와 건축적 요소들의 공간 표현 효과에 의해 공간이 형성되어 가는 방식을 그림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간 구축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루이스 칸의 건축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 관념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의 건축공간이 가진 다양함과 풍부함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조형적 측면에서의 작품 분석과 평가에는 소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건축이 갖는 공간 어휘들을 읽고 해석하는 하나의 시각과 방법을 개별작품의 구체적인 공간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간의 조직 논리와 성격을 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그림 도구(조직을 설명하기 위한 엑소노메트릭, 밑에서 올려다본 엑소노메트릭, 각종 분석도 및 요소들의 공간 표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투시도, 사진, 요소와 리듬 분석도 등)들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건축 공간 분석을 뒷받침하는 루이스 칸의 언술과 스케치들을 참고로 함으로써 객관성을 부여하였다.

개별 작품으로는 다양한 공간 조형 언어를 함축하고 있는 에일대학 영국 미술 센터를 선정하였고, 이 작품의 공간 분석을 통해 기하학적 체계와 건축적 요소들의 관계맺음에 의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룸(Room)들의 통합 방식을 밝히고, 룸(Room)의 공간구축적 성격과 표현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이 건물에서 룸(Room)은 형태상 닫혀진 상자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닫힌 공간, 즉 빛에 의해 공간이 한정되고 다른 룸(Room)과 공간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공간의 성격이 더욱 명확해지며, 건축적 요소들의 관계에 의한 풍부한 공간적 표현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확한 기하학의 평면과 형태를 통하여 다양한 조형적 공간 언어를 한번에 읽게 되는 이러한 공간 분석을 이용하여 루이스 칸 건축의 중심 개념인 룸

(Room)의 공간적 비밀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형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공간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독립된 구조와 빛에 의해 독자적 공간성을 확보하고 완전한 기하학 도형 자체가 공간구성의 체계로 적용된 룸(Room)은 루이스 칸 건축을 구성하는 공간 구축 단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룸(Room)은; 1) 공간의 조직 논리와 공간적 역할에 따라 격자 모듈과 개체 모듈로 구분되는 모듈 체계의 유니트를 형성하는 경우와, 2) 3차원의 공간 체계로서 기하학 도형의 안으로 공간짜기를 통해 중심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3) 모듈 체계와 중심 공간 형성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룸(Room)들이 공간적 위계를 갖고 결합함으로써 전체 공간의 조직 논리가 결정된다. 예일대학 영국 미술 센터는 독자적 조직 논리를 갖는 두 중심 공간의 형성과 그들 사이의 연결, 개체 모듈의 조합이 입체 격자 체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3)의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졌던 공간 구축에 대한 실험들의 집결된 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루이스 칸 건축은 룸(Room)을 공간의 구축 단위로 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공간 구성 방식과 구조방식이 일치하고, 서로 다른 공간적 위계를 갖는 완결된 룸(Room)들의 단속적 연결 관계를 통해 각 공간의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동시에 전체를 통합하고 있다.

2. 예일대학 영국 미술센터의 공간 분석을 통해 룸(Room)의 형성과 그들의 통합 방법에 의한 전체 공간의 조직 논리와 두 중심 공간의 독자적 조직 논리를 살펴보고, 건축적 표현 요소들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룸(Room)의 풍부한 공간 조형 언어를 발견함으로써 공간의 구축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예일대학 영국 미술센터는 입구홀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영역과 도서실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영역의 공간 구분이 있으며, 원통형 볼륨의 계단실의 오름 동선이 공간적 위계가 다른 두 중정을 연결시키면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 영역 구분은 최상층의 전시장 유니트들로 통합되는 주공간 흐름의 구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두 중심 공간 -입구홀 중정과 도서실 중정- 의 독자적 조직 논리는 각기 독립된 룸(Room)을 가능하게 하는 평면상의 기하학적 형태가 3차원 공간으로의 구축을 위해 적용된 개별 논리와 형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한 통합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전체의 조직 논리를 살펴보면, 공간 구축적 형태 요소들의 조합으로 형성된 두 중심 공간과 이들의 공간적 연결 관계의 존재 및 정사각형 모듈에 의한 그리드 체계의 병행되는 논리가 서로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각기 다른 공간적 특성과 역할을 갖는 룸(Room)들이 공간적 위치 관계를 맺으면서 외벽면의 구성 논리를 만남으로써 전체 공간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 논리가 공간의 구성 체계를 형성하면서 공간의 구축적 특성과 연관성을 갖는다면, 건축적 요소들(벽면, 재료, 빛, 구조, 디테일 등)은 그들의 관계에 의해 공간의 표현적 특성을 결정짓게 된다. 즉, 건축적 요소들의 상호간의 작용과 관계는 다양한 공간 효과를 낳음으로써 룸(Room)에 특별한 공간적 성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효과들은 재료의 짜임과 재질감이 나타내는 물성, 벽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평면화를 통해 면에 대하여 앞 뒤 방향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공간적 진동, 벽면 구성요소들의 리듬, 대비, 균형, 구조체를 통한 빛의 형태적 가시화와 공간적 성격차이의 부여, 공간의 표현성을 위한 디테일의 처리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작품을 통하여 룸(Room)이 갖는 조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루이스 칸 건축의 공간 구축 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간성 탐구를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여기에서 제안된 공간의 조형 언어를 발견하기 위한 건축 공간의 분석 방법은 앞으로 루이스 칸의 다른 작품들이 보다 건축적인 시각에서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다.

주요어: 루이스 칸, 룸(Room), 공간 구축, 조직 논리, 공간 효과, 건축적 요소, 조형

< >

| | | |
|----|---------------------|----|
| 1 | 序論 | 1 |
| 1. | 研究目的 | 1 |
| | 知的財産權法 保護範圍 | 1 |
| | 保護 | 2 |
| 2. | 研究範圍 | 3 |
| 2 | 概念 保護 必要性 | 4 |
| 1. | 序說 | 4 |
| 2. | 意義 | 4 |
| | 概念 | 4 |
| | 關聯概念 | 7 |
| 3. | 産業 | 8 |
| | 序說 | 8 |
| | 産業 概念 | 9 |
| 1) | 産業 意義 | 9 |
| 2) | 意匠 | 10 |
| 3) | 應用美術 | 11 |
| 4) | 産業 · 意匠 · 應用美術 相互關係 | 11 |
| | 産業 相互關係 | 12 |
| 4. | 特性 | 13 |
| | 文字 不可分性 | 13 |
| | 同時傳達性 | 13 |
| | 實用性 | 13 |
| | 不可分性 | 14 |
| | 同一性 | 14 |
| 5. | 保護 必要性 | 15 |

| | | |
|----|-------------------|----|
| 3 | 著作權法的 保護 | 18 |
| 1. | 序說 | 18 |
| 2. | 著作權法規定 | 18 |
| 3. | 應用美術作品 關聯判例 | 19 |
| | 事件 | 19 |
| 1) | 事件 概要 | 19 |
| 2) | 法院 判斷 | 20 |
| 3) | 評價 | 22 |
| | 韓服紋樣事件 | 23 |
| 1) | 事件 概要 | 23 |
| 2) | 法院 判斷 | 24 |
| 3) | 評價 | 26 |
| | 大韓紡織事件 | 27 |
| 1) | 事件 概要 | 27 |
| 2) | 法院 判斷 | 28 |
| 3) | 評價 | 32 |
| | 登錄事件 | 34 |
| 1) | 事件 概要 | 35 |
| 2) | 原告 主張 | 35 |
| 3) | 法院 判斷 | 36 |
| 3) | 評價 | 38 |
| 4. | 小結 | 39 |
| 4 | 保護 國際傾向 | 42 |
| 1. | 序說 | 42 |
| 2. | 保護 國際的 動向 | 42 |
| | 序說 | 42 |
| | 文學的 美術的 著作物 保護 條約 | 43 |
| 1) | 序說 | 43 |
| 2) | 保護 著作物 | 43 |
| 3) | 保護期間 | 44 |

| | |
|--|----|
| 世界著作權條約 | 45 |
| 產業財產權 保護 條約 | 45 |
| 產業 國際寄託 條約 | 46 |
| 保護 國際寄託 協定 | 46 |
| 1) 國際協定 制定 必要性 | 46 |
| 2) 協定 締結過程 | 47 |
| 3) 協定 體系 內容 | 48 |
| 3. 外國 動向 | 55 |
| | 55 |
| 1) 序說 | 55 |
| 2) 著作權法 | 56 |
| 3) 判例 | 58 |
| 4) 學說 | 60 |
| 5) 保護 動向 | 62 |
| | 64 |
| 1) 序說 | 64 |
| 2) 著作權法 保護 | 64 |
| 3) 不正競爭防止法 保護 | 71 |
| | 76 |
| 1) 序說 | 76 |
| 2) CDPA(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76 |
| | 78 |
| | 79 |
| 1) 著作權法 | 79 |
| 2) 意匠法 | 80 |
| 小結 | 82 |
| 5 著作權法 保護方案 | 84 |
| 1. 序說 | 84 |
| 2. 意匠法 保護 | 84 |
| 3. 不正競爭防止法 保護 | 85 |
| 4. 立法的 考慮 | 87 |

| | |
|---------------|----|
| 6 結 論 | 89 |
| Abstract..... | 91 |

제1장 序 論

1. 研究의 目的

(1) 知的財産權法의 保護範圍

知的財産權法은 창작자에게 그 노력의 대가를 인정하고, 그 산물이 확산되어 타인에게 이용되는 것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人間의 創作性(human creativity)을 보호하고 길러주며¹⁾ 나아가서 인류 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인간이 창작한 모든 것이 지적재산권의 대상에 포함된다²⁾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일정한 한도 내라고 하지만 창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사회적 확산을 억제하게 되어서 문화의 향상,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대상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실제 법체계를 살펴보더라도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의장법,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으로 나누어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별법으로 그 대상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창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정법상 제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가 어렵다. 또한 각 국가마다 법규가 상이하므로 각 법이 규정하는 보호의 대상에 있어서도 나라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1) Donald S. Chisum & Michael A. Jacobs,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Matthew Bender & Co., Inc.(1995), §1A 1-2.

2) 지적재산권의 대상은 문학·영상 예술·드라마·음악·컴퓨터 프로그램·생명공학·전자공학·역학·화학·디자인 산물·신품종 식물 등 인간 창작성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Donald S. Chisum & Michael A. Jacobs, 앞의 책, §1A 참조.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창작의 산물이 발생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이다. 지적재산권법이 인간의 창조적, 정신적 산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그 본래의 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법 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타이프페이스의 保護

문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인류 문화 발달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이러한 기능적 요소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인쇄술의 발달로 손으로 글을 쓰는 단계를 지나 문자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일정한 특징을 지닌 문자의 형태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타이프페이스(Typeface)³⁾는 이와 같은 서체의 도안 또는 글자꼴 등을 뜻하는 용어로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창작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창작자에 대한 보상과 이에 따른 인쇄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이프페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⁴⁾ 반면에 타이프페이스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지니지 못했으며, 비록 창작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실용적 측면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타이프페이스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 타이프페이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기도 한다.⁵⁾

3) 本稿, 제2장 2 참조.

4) 타이프페이스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本稿 제2장 5 참조.

5)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반대하는 주장에 관하여는 本稿 제3장 3 (4) 참조.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에서는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관해 명백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에 타이프페이스의 보호가 문제 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⁶⁾을 내리고 있다. 또한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관하여 각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도 일정하지 않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현행 법제도하에서 타이프페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할지 여부와 만약 보호한다면 그 방안을 조사 및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타이프페이스가 우리 나라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법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참고로 삼고자 한다.

2. 研究의 範圍

본 연구는 타이프페이스를 산업디자인과의 관련하에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으로서의 타이프페이스 관련 개념들을 정리한 후에 그 법적보호의 필요성과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이에 관련된 국제협약을 정리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 보호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적합한 타이프페이스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7) 자세한 내용은 本稿 제4장 참조.

제2장 타이프페이스의 概念과 保護의 必要性

1. 序說

타이프페이스는 “타이프페이스의 保護 및 그 國際寄託에 관한 빈 協定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에서 이를 정의⁸⁾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또한 현대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할 때, 종래에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도 타이프페이스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아직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관한 입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념 설정에 있어서 좀더 유연한 견해를 취한다면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타이프페이스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중의 하나가 산업디자인과의 관계이다. 일종의 디자인인 타이프페이스가 산업디자인에 속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산업디자인으로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타이프페이스에 국한하여 그 보호를 구하려는 노력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개념과 산업디자인과 타이프페이스와의 관계의 고찰을 통해 타이프페이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그 보호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타이프페이스의 意義

(1) 概念

8) 빈 협정이 정의하고 있는 타이프페이스의 개념은 本稿 제2장 2 (1) 참조.

타이프페이스(Typeface)는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⁹⁾이라고 일컬어진다. 조금 더 상세하게는 “한 벌의 문자, 숫자, 기타 상징적인 기호들로서, 그 형태가 표기체제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반복적인 디자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고, 문장을 구성하거나 그밖에 의미 있는 기호의 조합을 구성하는 실용적 기능을 하는 물품에 형상화된 것”¹⁰⁾을 지칭한다.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¹¹⁾, ‘字型’, ‘글자꼴’, ‘인쇄용 서체’¹²⁾, ‘書體設計’¹³⁾라고 불리우고 있다. 타이프페이스와 같은 書體를 字體와 구분하기도 하는데, 자체는 문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골격 즉, 한자에서의 점·획·종·곡자 등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서체는 자체를 기초로 문자를 표현하는 양식·특징·경향 등이 일관되게 형성된 것, 즉 한자에서의 행서, 초서 및 활자에서의 명조, 고딕, 이탤릭체, 로마체 등이다.¹⁴⁾

일반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되고 있지만 자세히 구별해 본다면 타이프페이스라는 개념은 사용되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기술을 통해 타이프페이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나아가서 이와 관련되는 기타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타이프페이스는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狹義와 廣義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 狹義로는 “타이프페이스의 保護 및 그 國際寄託에 관한 協定”, 독일의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와 국제기탁을 위한 協정에 관한 법”, 영국의 저작권법 규정 등

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용어 해설」(1988), 294면.

10) H.R. p.55. Merville B. Nimmer and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1, Matthew Bender(1994), 2-178.6에서 재인용.

11) 박대순(편), 「현대디자인 용어사전」, 디자인 오피스(1994), 288면

12) 한승헌,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 나남출판(1994), 261면.

13) 광대웅 외 7인, 「디자인 대사전」, 승례문(1994), 72면.

14) 박문석, “저작권과 글자꼴의 법적 보호(2)”, 인쇄신문, 1991.11.18자 4면 참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타이프페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1991), 12면에서 재인용.

1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14)의 연구보고서, 13면.

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쇄기술적 방법¹⁶⁾에 의하여, 활자, 사진식자판 등 유체물의 표면에 나타난 한 벌 글자의 형상”을 의미한다. 廣義로는 “인쇄기술적 방법에 의하든 서예, 컴퓨터 등 인쇄기술적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든 활자, 지면, 화상 등의 컴퓨터 자판, 사진식자판 등 유체물의 표면에 나타난 한 벌 글자의 형상”을 뜻한다.

이상의 타이프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타이프페이스를 협의로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의 출판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 컴퓨터가 개발되어 이를 활용하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금까지 종이 등에 기록된 내용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디지털화하게 되어 스피커나 화면을 통해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¹⁷⁾ 즉 지금까지 출판이란 “서적이거나 도화 등을 인쇄하여 발매, 반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여기서 ‘인쇄’라는 의미는 ‘정보의 저장’이라는 의미로 재정립되어야 할 부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컴퓨터의 발달로, 책을 대신할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출판물이 등장함에 따라 협의의 개념처럼 인쇄기술적 방법에 의한 표현에 타이프페이스의 범위를 한정한다면 그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컴퓨터에 의한 전산활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미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일컬으며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도 이를 타이프페이스인 서체와 구별하여 미술저작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볼 때, 타이프페이스 개념설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¹⁸⁾

16)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 제2조에 의하면 타이프페이스는 인쇄기술(graphic technique)에 의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한다.

17) 전자출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두식(편), 「전자출판론 I」, 타래(1993), 23-33면 참조.

18) 반면에 서예를 미술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의 현실에 비추어 이

(2) 關聯概念

타이프페이스와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Calligraph: 실용적인 기능보다도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예컨대, 우리 저작권법상의 '서예').

② Logotype: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③ Lettering: 조형적 미를 고려하여 문자를 쓰는 일을 가리킨다. 레터링에는 이미 만들어진 서체를 정확하게 옮기거나 可讀性이 높은 문자를 조화있게 쓰는 기술, 아주 새로운 독특한 문자를 창안하는 일들이 모두 포함된다.¹⁹⁾

④ Typography: 넓은 의미로는 인쇄술을 의미하며, 인쇄를 전제로 한 문자표현이나 작품을 지칭하는 말이다. 활자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의미하며 사진식자, 레터링, 글자의 표현 등 글자를 주제로 한 디자인을 모두 가리킨다.²⁰⁾ 또는 손으로 쓰는 문자라는 의미의 레터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계적인 수법에 의한 서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²¹⁾

⑤ Font: 구문(歐文)에서는 같은 서체, 같은 크기인 알파벳, 숫자, 기술기호 등의 문자 한 세트를 폰트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 서체의 문자 세트만이 아니라 原字와 印字된 문자 모두를 폰트라고 한다.²²⁾ 또는 타이프페이스를 표현하거나 창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컴퓨터 화일이나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를 타이프페이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14)의 연구보고서, 13면.

19) 광대웅 외 7인, 주13), 188면.

20) 위의 책, 713면.

21) 박대순(편), 주11), 288면.

22) 광대웅 외 7인, 주13), 784면.

있다.²³⁾

폰트는 크게 비트맵(bitmap) 폰트²⁴⁾와 윤곽선(outline) 폰트²⁵⁾로 나뉘어 진다. 비트맵 폰트는 타이프페이스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이프페이스와 동일한 보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윤곽선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보호에 있어서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²⁶⁾

3. 産業디자인과 타이프페이스

(1) 序說

타이프페이스(Typeface)는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타이프페이스가 인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⁷⁾ 즉, 단순히 순수한 미적 목

23) Terrence J. Carroll, *Protection for Typeface Designs : A Copyright Proposals*, Computer & High Tech. L.J.(1994), p.141.

24) 점을 찍어서 글자를 표현하는 프린터 방식을 의미한다. 글자가 들어갈 면적을 매우 작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글자의 내부에 해당하는 정사각형 부분에 색을 칠하여 글자를 표현한다. 임순범, “글자꼴 설계를 위한 컴퓨터의 활용 범위 및 방향”, 「월간디자인」(1989.10.), 99면.

25) scalable font라고도 불리우며 글자의 윤곽선을 여러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직선, 원호 또는 자유곡선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은 몇 개의 제어점(control)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글자의 크기 변화와 폭, 기울임 등의 변화가 매우 수월하다. 자세한 설명은 위의 글, 99면 참조.

26)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비트맵 폰트를 타이프페이스와 동일하게 보아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57 FR 6201), 윤곽선 폰트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57 FR 6202).

27)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 제2조 (i)에서는 “타이프 페이스”를 정의하면서 그 방법에 상관 없이 인쇄기술(graphic technique)에 의해 문장을 구성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에 의해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기계적 사용을 통해 인쇄상 實用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²⁸⁾ 本稿에서는 이러한 타이프페이스의 실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산업디자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産業디자인의 概念

산업디자인과 지적재산권법상 개념인 의장, 응용미술의 의의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고자 한다.

1) 産業디자인의 意義²⁹⁾

28) 서예는 순수히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타이프페이스는 인쇄에 사용된다고 하는 실용목적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우리 저작권법 제4조에서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서예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예는 타이프페이스와는 달리 미술저작물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최근에 서울지방법원 1997. 2. 21. 판결(96가합42432)은 서예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하였다. 원고는 서예가로서,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民體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작품화하여 왔으며 제7회 한국서예청년작가전에 민체로 작품화한 춘향가를 출품하였다. 피고 태흥영화주식회사는 영화 “축제”를 제작하여 상영하면서 이 영화의 필름, 홍보물, 광고물에 “축제”라는 글자를 기재함에 있어 위 춘향가에서 원고가 쓴 글자를 사용하였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또 다른 피고 정인영은 소설 “축제”를 출판하면서, 위 소설의 표지, 홍보물, 광고물에 위 소설의 제목을 기재하면서 이 사건 글자를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쓴 이 사건 글자를 사용하면서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위 홍보물 등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쓴 이 사건 글자가 원고의 사상, 감정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저작물이라고 보아 피고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글자는 원고의 서예작품이고 피고는 이를 작품에서 발췌해서 사용한 것이므로 이 판결은 미술작품으로서의 서예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이 사건 글자를 가리키며 “서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한 것은 서예와 서체(타이프페이스)의 차이점을 생각할 때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본다.

29) 이상정, “産業디자인의 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法學博上學位論文(1995), 11면.

산업디자인은 Industrial Design을 번역한 말이다.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 등의 미·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이에에는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동 법에서 말하는 산업디자인이란 디자인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이라고 하면 유용한 물품의 장식적·미적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제품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계제품을 위한 예술가의 계획에 관하여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手工作의 경우에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적 형태가 창조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완전히 동일한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 비하여, 기계제품의 경우에는 그 예술적 효과는 원래의 디자인 중에-혹은 완전히 동일한 물건으로서 양산되는 제품의 패턴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워킹모델(working model) 중에-완성되는 것이다.³⁰⁾

2) 意匠

의장이란 일본 明治 초기에 영미의 design을 번역한 말로서, 디자인으로부터 유래한 말이다. 우리 의장법 제2조 제1항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의장법이 규정하는 의장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① 물품에 표현되어야 하며(물품성) ②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형태성) ③ 시각을 통하여(시각성) ④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심미성)이 요구되고 있다.³¹⁾

30) Encyclopedia of World Art, Vol. 8, London(1959). 이상정, 주29)의 논문 11면에서 재인용.

3) 應用美術

응용미술(applied art)이란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수공예제품이나 공업제품과 미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순수미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현재는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말로서 쓰인다. 미술공예품, 장신구 등 실용품 자체인 미적 창작물, 염색도안 등 실용품의 모양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등이 이에 속한다. 건축저작물도 용어의 의의에 비추어 본다면 응용미술저작물에 속하나 일찍부터 별도의 유형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³²⁾

응용미술의 국제적 개념을 살펴보면 ① 미술공예품, 장신구 등 실용품인 것, ② 가구에 장식된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것, ③ 일용품의 金型 등 양산되는 실용품의 금형으로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④ 염직도안 등 실용품의 무늬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³³⁾

다시 말해서 응용미술이란 수공예품이건 공업적 생산품이건 묻지 않고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저작물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³⁴⁾ 그러므로 응용미술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미적이어야 하며, 실용품에 응용되어야 한다. 산업디자인³⁵⁾을 완성품이 특별한 외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공업제품에 응용된 모양, 장식 및 형태의 특징이라고 정의한다면 실용품이 공업적 규모로 생산되는 한 응용미술저작물을 산업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다.³⁶⁾

4) 産業디자인 · 意匠 · 應用美術의 相互關係

31) 송영식 외 2인, 「지적소유권법」, 육법사(1994), 553면.

32) 이상정, 주29)의 논문, 14면.

3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용어해설」(1988), 200면.

34) WIPO Glossary 1981, p.9.

35) WIPO Glossary 1981, p.133.

36) 이상정, 주29)의 논문, 14면.

응용미술이란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킨다. 연혁적으로 보면 응용 미술로서의 공예는 기계생산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공예 내지는 量産공예로, 나아가서 공업디자인 내지는 산업디자인으로 그 양상이 변해왔다. 영어에서도, 'applied art' 내지는 'arts and crafts'로부터 'art and industry', 'industrial art'로 그리고 'industrial designs'으로 그 명칭이 변하여 왔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WIPO 용어사전상으로도 공예품이 수공예품인지, 공업적 생산품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 응용미술이라는 개념은 산업디자인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미술적인 노력을 나타내는 디자인만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의미 정도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응용미술저작물과 산업디자인간의 현실적인 차이는 없다.³⁷⁾ 한편 의장은 양산된 실용품의 외부형태를 미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의장법상의 의장은 모두 응용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법은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장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렇게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³⁸⁾

(3) 産業디자인과 타이프페이스의 相互關係

타이프페이스는 實用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된 미적 요소를 지닌 디자인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산업디자인에 해당하며 또한 응용미술저작물로 보는 데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상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하고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개념인 응용미술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응용미술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는 취지가 모든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37) Stephen P. Ladas, Patents, Trademarks and Related Rights(1975), p.873. 이상정, 주29), 15면에서 재인용.

38) 이상정, 주29)의 논문, 15면.

제한이 존재한다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여부가 결정된다.

의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장법상 보호의 전제가 되고 있는 ‘물품’ 개념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보호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³⁹⁾

4. 타이프페이스의 特性

타이프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수성을 살펴보는 것은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점을 고려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⁴⁰⁾

(1) 文字와의 不可分性

타이프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문자에 대한 만인공유의 이미지를 전제로 하여 그 문자 본래의 기본적 형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적 또는 미학적인 변형이다. 따라서 의사 및 정보 전달 과정에 있어서는 문자로서의 기능이 발휘된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2) 同時傳達性

타이프페이스는 문자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미감을 전달하는 동시적 존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實用性

타이프페이스는 또한 인쇄기거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39) 의장법에 의한 보호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本稿 제5장 참조.

40) 자세한 것은 박문석, 주14), 4면 참조.

자주 접할 수 있는 인쇄물이나 컴퓨터 화면상 등으로 실제생활에 이용되고 있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4) 한별성과 不可分性

타이프페이스는 개개의 자모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조합이어야 하는 성질, 즉 한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모꼴 하나하나가 분리하여 타이프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분성도 지닌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5) 同一性

타이프페이스는 한별을 이루는 개개의 자모꼴이 같은 경향과 같은 스타일에 의하여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지녀야 성립되기 때문에 이 동일성이 하나의 특색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특성 때문에 타이프페이스를 창작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게 된다. 즉 본질적으로 문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더라도 전달수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특성을 이유로 타이프페이스 창작에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정도로 충분한 창작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타이프페이스가 문자와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는 문자에 대한 독점을 야기한다는 입장에서 그 보호를 부정하기도 한다.

타이프페이스가 실용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타이프페이스가 순수한 미술작품과는 다르며 따라서 그 취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는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 작품에 속하며, 응용미술작품보호에 대한 저작권법의 해석에 따라 그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⁴¹⁾

5. 타이프페이스 保護의 必要性

타이프페이스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창작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와 같이 창조된 타이프페이스에 대한 권리를 창작자에게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타이프페이스를 디자인한 창작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성을 고무시키기 위해 창작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타이프페이스의 경우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창작자의 창작성 고무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는 인쇄문화의 향상·발전과 연결되므로 인쇄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보호가 필요하리라 본다.⁴²⁾

특히 한글은 타이프페이스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문자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 일본 가나가 히라가나와 가다가나 100자, 영문 알파벳이 대소문자 합쳐 52자인 데에 반해 한글은 서체 한벌을 제작하는 데에 2,500~3,200자가 필요하고 1억원에 해당하는 비용과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한글이 조형적으로 영문에 비해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⁴³⁾ 한글 타이프페이스의 개발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한글의 특성을 생각할 때, 만약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를 인

41) 자세한 내용은 本稿 제3장 참조.

42) Mazer v. Stein, 74 S.Ct. 460, 347 U.S. 201. 1954. 3. 8 판결에서 리드(Reed) 대법관은 “저작자와 발명자의 재능을 통하여 공공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개인에게 이익을 부여하여 개별적 노력을 자극함에 있다”고 하고 있다.

43) 한 편 문화 전달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자를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문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것이 표면적인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두식(편), 「신문가로짜기」, 한국언론연구원(1989), 99면.

정해서 그 창작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글의 타이프페이스 개발은 다른 문자에 비해 더욱 기대하기가 어렵고 인쇄문화의 발달도 힘들게 될 것이다.

또한 시대성과 보편성에 맞는 타이프페이스를 개발·보급·장려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글자를 만들고, 이러한 글자를 전제로 한 남북교류를 통해, 활자에 의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존재한다.⁴⁴⁾

오늘날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컴퓨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대중의 글자 생활은 기계화되었고 따라서 타이프페이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그 결과 대중의 실생활에서 타이프페이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 예로 서적을 구입할 때 그 미적 요소, 즉 표지 디자인·편집방법 등과 함께 타이프페이스(서체)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음이 그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반면에,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타이프페이스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도 용이하게 되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타이프페이스의 경우에 기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타이프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도출하는 데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뿐이라고 한다.⁴⁵⁾ 이와 같이 기술문화의 발달로 타이프페이스가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도는 높아지는 한편, 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인쇄매체 전산화의 한 유형인 탁상인쇄(Desk Top Publishing)⁴⁶⁾도 타이프페이스 보호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탁상인쇄는 빠르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방식이다. 근래에 들어 DTP 편집용 소프트웨어의 기능

4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14)의 연구보고서, 19면.

45) 전자신문, 1995. 7. 26자 참조.

46)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편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소형, 低價의 레이저 빔 프린터의 개발 등으로 본격화된 것으로서 문서의 편집과 프린팅을 일원화시켜 즉석에서 문서 편집과 다량의 인쇄물을 프린트해내도록 만든 시스템을 의미한다. 김두식(편), 「전자출판론 I -출판전산화와 멀티미디어-」, 타래(1993), 35면.

이 높은 수준까지 개발되어 본격적인 상업용 출판물의 편집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⁴⁷⁾ 그러나 이런 유용한 점을 지닌 DTP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타이프페이스가 다양하고 아름다워야한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타이프페이스는 인간 창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더욱이 한글은 그 특수성 때문에 보호가 더 필요하다. 또한 현대 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라, 타이프페이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이와 더불어 그 보호에 대한 요청이 가중되고 있다.

47) 위의 책, 36면.

제3장 타이프페이스의 著作權法的 保護

1. 序說

타이프페이스는 산업디자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는 산업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으로는 응용미술작품으로서 취급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응용미술작품과 관련되어 성립된 몇 개의 판례⁴⁸⁾로 이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응용미술작품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과 판례를 소개하고 우리 저작권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타이프페이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著作權法規定

구 저작권법(1957년 법)은 工藝만을 저작물로서 예시하고 있었으나 현행 저작권법⁴⁹⁾에서는 제4조에서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어 응용미술작품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나 의장법과의 저촉 여부 등에 대

48) 롯데사건(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한복문양사건(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대한방직사건(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10 선고 94노2571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타이프페이스 등록사건(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이 응용미술작품에 관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本稿 제3장 3에서 기술하고 있다.

49) 저작물을 예시하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4호는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고있다.

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입법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응용미술작품의 보호가 문제된 사건을 통해서 법원이 저작권법으로 응용미술작품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應用美術作品 關聯判例

(1) 롯데事件⁵⁰⁾

1) 事件의 概要

이 사건의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호텔 롯데는 롯데월드의 개점에 앞서 상징이 되는 도안을 제작하기로 하여, 그 계열사인 광고대행업체에 도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여러 출품작 중에서 신청인이 너구리를 주제로 하여 롯데라고 이름 붙인 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당선료가 지급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후 수정, 보완을 거친 도안을 기본도안(그림 1)으로 하고 이 기본도안을 바탕으로 응용도안의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은 35종의 응용도안을 제작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응용도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피신청인 측에 넘겨 주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도안에 대해 다시 수정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만화영화제작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이항재와 캐릭터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제작한 도안의 사용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 후 피신청인은 이항재가 제작 완료한 도안(그림 2)을 롯데라는 이름으로 상표 및 의장 출원하여 등록하는 등 다량의 상표 등록을 마치고 롯데월드의 상징물로 하여 사용

50)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법원공보」 제938호 598-600면).

및 판매를 하여 왔다.

신청인은 著作財産權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著作人格權 중 同一性維持權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사용을 금하는 가처분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그림 1



그림 2

2) 法院의 判斷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제1심⁵¹⁾에서 기각되었으나 신청인의 항고에 대하여

51) 제1심에서는 너구리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으며, 다른 부분에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본 도안을 이미 완료한 후 응용도안을 변형하여 피신청인의 도안을 만들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도안은 신청인의 도안과 관계 없이 전혀 새로운 제작 과정을 거쳐 제작한 것이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도안이 신청인의 도안을 변형하여 만든 것임

제2심⁵²⁾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⁵³⁾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본건 도안은 피신청인의 발의에 기한 점에 비추어 저작자가 피신청인이라고 판단하여 著作人格權侵害 與否는 처음부터 문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은 우선 저작권법의 취지는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작한 롯데월드의 상징도안인 너구리(캐릭터) 도안의 기본도안과 응용도안은 그 소재의 선정 뿐 아니라 그 제작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제작자인 신청인의 재량과 예술적인 감각 및 기술에 의하였으므로 위 너구리 도안의 저작자는 제작자인 신청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심이 판시한 것처럼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되겠지만, 이러한 저작

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5. 2 결정 89카2956,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편), 「한국저작권판례집」, 205-210면.

52) 제2심에서 법원은 부분적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두 도안에 나타난 아이디어의 기본방향,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느낌, 이미지 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피신청인의 도안은 신청인의 도안을 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의 도안을 바탕으로 하여 위에서 본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 부분과 같이 임의로 변경, 변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1990. 6. 25 결정 89라55, 위의 책, 196-205면.

53) 서울고등법원 1992. 6. 26 선고 91카98 판결.

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진다는 점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아서 저작인격권의 발생을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신청인이 저작자이고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이 발생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본건에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 너구리 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는 달리 그 성질상 주문자인 피신청인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피신청인측이 도안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를 유보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 요구에 대하여 몇 차례 수정을 하다가 자기로서는 수정을 하여도 같은 도안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수정할 것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그의 의무인 위 도안의 수정을 거절함으로써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 변경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항재에게 하도록 한 위 변경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評價

롯데 사건은 우리 나라에서 저작권법상 캐릭터 문제가 논의된 몇 안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롯데 호텔측이 캐릭터 이용을 위하여 캐릭터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저작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제3자가 개발한 도안이 신청인이 개발한 도안의 무단변경으로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실제로 제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고 하며, 실제로 제작한 저작자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소재의 선정 뿐 아니라 그 제작이 제작자의 재량과 예술적인 감각 및 기술에 의하였음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이 사건처럼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에 비해 인격적 가치가 가볍게 평가되지만 이런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의 표현이므로 제작자가 상당한 애착을 가지는 점은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응용미술작품에 대해 저작인격권이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판결은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응용미술작품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한 예가 되겠지만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기왕에 성립된 저작권은 응용미술인지 순수미술인지에 관계 없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2) 韓服紋樣事件⁵⁴⁾

1) 事件의 概要

원고는 1985. 8. 15 한복의 치마폭 사이에 수직으로 치마 바탕색과 다른 색의 가는 띠 모양의 사다리꼴의 천을 대고 그 천 안에 연꽃, 나비 등 구상적 무늬 또는 추상적 무늬 등으로 구성된 장식 무늬(그림 3)를 삽입한 치마를 제작하여 같은 해 9. 16 한복패션쇼에 출품한 후 1988. 6. 27 위 디자인을 “사다리꼴무늬와 장식 문양”이라는 제명하에 맨 처음 공표연월일을 1985. 9. 16로 하여 미술저작물로서 문화공보부에 저작권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1989. 2월 호에 한복의 치마폭 사이에 수직으로 치마 바탕색과 다른 색의 가는 띠 모양의 직사각형의 천을 대고 그 천 안에 덩쿨 줄 꽃무늬(그림 4)를 삽입한 치마를 피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오다가 1989. 2. 28에 이르러 위 디자인을 “덩쿨줄 꽃무늬”라는 제명하에 맨 처음 공표연

5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법원공보」 제905호, 49-50면).

월일을 1989. 2. 1로 문화공보부에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한복의 치마폭마다 수직으로 일정한 넓이의 가는 천을 대고 그 천 안에 무늬를 삽입하는 디자인은 원고가 최초로 창작하여 발표한 것이고 피고는 천 안의 무늬를 장식무늬에서 넝쿨 줄 꽃무늬로 바꾸었을 뿐 원고의 장식무늬 치마의 위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치마에 수직의 천을 대는 것은 고대의 전통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물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피고가 위 꽃무늬 치마에서 사용한 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고대의상 등 각종 자료를 보고 피고 스스로 고안한 것이라고 다투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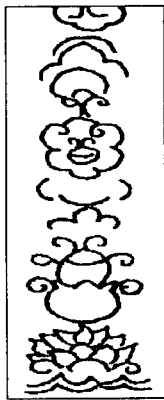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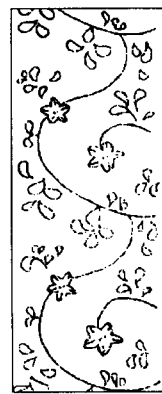


그림 4

2) 法院의 判斷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55) 그림 3과 그림 4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기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에서 발행한 종합발표회집에 실린 김가희, “織物디자인의 判例 分析과 保護制度의 考察”에서 인용.

제1심56)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순전히 실용적인 효용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술저작권의 보호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작품의 주된 본질이 심미적인 데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실용성을 가진다 하여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창안한 디자인 기법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가의 판단에 있어서는 기법의 독창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표현기법 그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는 만인 공동의 재산으로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인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한복치마의 디자인 기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항소심57)에서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 기법 중 독창적인 부분에는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였지만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바,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복 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만 한하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는 다른 색의

56)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4. 19 선고 89가합32239 판결, 著作権審議調停委員會(편), 주51), 146-152면.

57) 서울고등법원 1990. 11. 27 선고 90나22532 판결.

사다리꼴의 띠를 수직으로 덧대고 그 띠 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의 장식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하여 얻은 것이고, 피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의 직사각형 띠를 덧대고 그 띠 안에 넝쿨 줄꽃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넣은 것인바, 치마나 저고리에 바탕천과 다른 색의 띠나 일정한 문양을 넣은 띠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덧대어 실용성과 심미감을 더하는 의복제작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저작물 중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 띠를 수직으로 덧대거나 띠 안에 무늬를 넣는 방법 자체는 종래의 문화적 유산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띠의 모양을 사다리꼴로 하고 띠 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을 소재로 한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한 점에서 기법상의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비해 보면 치마를 착용하였을 때 치마 상단의 주름으로 인해 피고의 띠도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게 보인다는 점이 원고의 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원고의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띠 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評價

한복문양사건은 전통복식인 한복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판단 문제, 동일성·유사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응용미술인 의상 디자인이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순전히 실용적인 효용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미술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작품의 주된 본질이 심미적인 데 있다면 실용성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실용적인 효용성을 가지는 응용미술작품이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작품의 주된 본질이 심미적인 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으로 작품의 본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항소심은 응용미술작품이 미술적 가치를 가지는 이상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경합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주된 본질이 심미적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미술적 가치만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이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다른 저작물과 같이 독창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大韓紡織事件

1) 事件의 概要

원고는 미국에서 직물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법인으로서 'Le Desire'와 'Le basket'이라는 직물디자인을 각각 이탈리아 디자인업체인 '아레도스타일'과 '유니언 디자인'사에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양도받아 1991년 7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같은 해 9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1992년 초 被告人인 대한방직주식회사는 미국 면직물업체인 코빙튼사(Covington Fabrics Corp.)의 저작물인 'Le Desire'와 'Le basket'을 승낙 없이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WTO의 출범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 가을에 미국 직물생산공급자 협회(TPSA: Textile Producers and Suppliers Association)와 코빙튼사는 대한방직, 동국방직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TRSA 회원사의 직물을 불법 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고발하였다. 또한 위의 각 직물디자인이 도안되어 있는 직물의 제

조, 전시, 판매 또는 수출의 금지와 위의 각 직물 디자인이 도안되어 있는 직물 및 같은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인쇄시설의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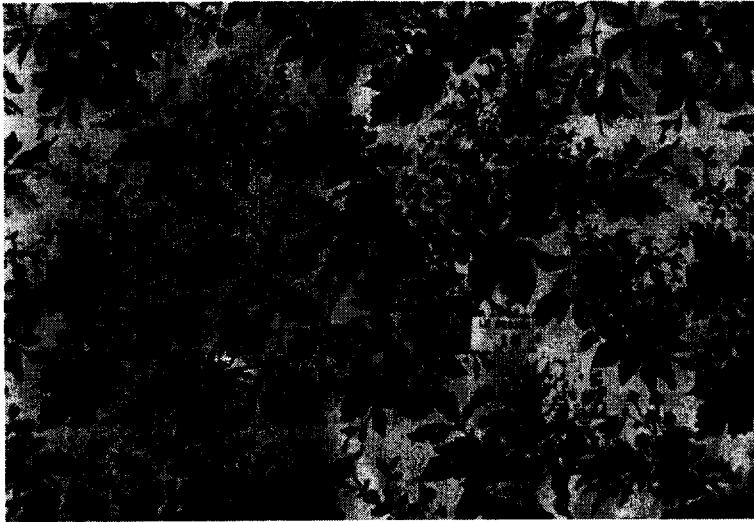


그림 5 Le Desire

2) 法院의 判斷

(가) 刑事事件⁵⁸⁾

검사는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정식재판 역시 동일한 결론에 이르자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⁵⁹⁾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58)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5. 26 선고 93고단11575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6부 1994. 11. 10 선고 94노 2571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판례공보」 제8호 1170-1172면).

59) 항소심 법원은, 응용미술작품 중 염직도안이나 실용품의 모델 등과 같이 본래

대법원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아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본 판결에는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나타나 있다.

(㉠)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작품은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해 보호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중첩적 보호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면, 의장법의 여러 제한규정들이 의미를 잃게 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이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염직도안은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민사事件60)

이 사건의 형사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약식기소 내용과는 다르게 법원이 무죄

산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도안이나 모델이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 혹은 관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도안은 코빙턴사가 직물디자인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0년에 제작하여 현재까지도 직물의 염직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색채나 문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물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6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7 선고 93가합48477 판결.

를 선고하였으나 그 후에 선고된 민사 판결에서는 대한방직이 코빙턴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즉 민사법원은 응용미술작품 중 직물디자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판단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 제2조 1호는 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1항 4호는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을 미술저작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은 형상 또는 색채로써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미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미술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둘째 창작성이 있고, 셋째 대외적인 표현물임을 요한다. 이 경우에 예술의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지적, 문화적 창작’을 내포하고 있으면 되고, 창작성이란 ‘신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만들었다는 의미의 ‘독창성’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응용미술은 순수미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용품에 응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을 의미한다. 응용미술작품 중에서 산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염직도안 등은 의장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과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의미를 잃게 되어 산업계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⁶¹⁾

(㉢) 이와 같이 응용미술작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문제로 아직 각국의 입법 및 판례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응용

61) 의장법의 보호요건인 新規性은 없지만 저작권법의 보호요건인 創作性이 있는 경우, 의장법에 규정된 10년의 존속기간이 경과했으나 저작자가 생존 중이거나 사후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의장등록을 결여했으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 등을 의장법상의 제한 규정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경우의 예로 들 수 있다.

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사실과 의장권과 저작권의 보호목적이 상이하다는 사실⁶²⁾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도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㉔) 물리적 또는 관념적인 분리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평면적인, 즉 2차원적인 회화나 도화는 실용품에 인쇄되거나 이용되어도 회화나 도화로서 인식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에 입체적인, 즉 3차원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미적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과 물리적 또는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한지 또는 실용적인 기능과 일체화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직물디자인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의 지적, 문화적 창작으로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져 창작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물디자인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㉕) 직물디자인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직물디자인과 동일하게 인쇄된 직물을 제조, 판매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의 직물디자인이 있는 직물을 제조, 전시, 판매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후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되자 민사 제2심에서는 대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코빙톤사에서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민사사건이 확정되었다.

62) 의장권은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원래 목적으로 하며, 저작권은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評價

대한방직 사건에서 법원은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이 응용미술작품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응용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다만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의 혼란 및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목적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도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⁶³⁾

실용적 기능과 물리적 또는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미적 요소이어야 한다는 것은 응용미술의 저작권적 보호를 위해 민·형사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다. 다만 그 판단 결과에 있어서 민사법원은 분리 가능함을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고 형사법원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저작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판결들이 보여주고 있는 요건인 分離可能性(separability)은 미국법하에서 산업디자인을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하려고 할 때 중요시된 기준이다. 이 때에 그 분리가능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여야 하는가,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하면 충분한가, 또한 관념적 분리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면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는 하원보고서는 응용미술저작물과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디자인작품을 구별하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⁶⁴⁾ 보

63) 형사 항소심(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6부 1994. 11. 10 선고 94노 2571 판결)의 견해를 살펴보면, 본래 산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경우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 혹은 관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한다. 산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제한을 가하는 대법원이나 민사법원의 입장과 구별된다.

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관념적으로만 실용품으로부터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요소라면 저작권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 점에 관한 연방항소법원의 태도는 ① 기본적으로 관념적 분리가능성 기준을 채택하여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고 그 결과 특허법과의 부분적 중복보호를 인정하는 경우, ② 기본적으로 물리적 분리가능성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법과의 중복보호를 부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⁵⁾

미국의 경우 실제로 직물이나 벽지의 디자인과 같이 평면적, 2차원적인 것은 거의 전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나 3차원적, 입체적 디자인인 경우는 실용적 요소와 관념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가 여부에 의해서 저작권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분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는 물론, 관념적 분리가능성으로 족하다고 한 경우에도 실제 적용결과는 대체로 물리적 분리가능성을 적용한 것과 같게 되는 것이 미국 판례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⁶⁶⁾ 따라서 3차원적 물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64) The House Report on the Copyright Act of 1976. Rep. No.94-1476, 94th Cong., 2d Sess. p.55, 자세한 것은 本稿, 제4장 3 (1) 참조.

65) 관련되는 주요 판결들은 이상정, 주29), 102-112면 참조.

66) Carol Barnhart Inc. v. Economy Cover Corp. (773 F.2d 411 (2d Cir. 1985)) 사건에서 사람 몸통 크기의 마네킹에 관하여 저작물성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실용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건으로 미적 요소가 실용적 요소로부터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적 또는 미술적이라고 주장된 마네킹의 가슴형태나 어깨너비는 옷의 전시라는 기능적 형태와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람 몸통의 마네킹이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슴이나 어깨너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원이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물리적 분리가능성 기준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Bandir International, Inc. v. Cascade Pacific Lumber Co. (834 F.2d 1142 (2d Cir. 1987))은 자전거 걸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법원은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으면서 디자인 과정에서의 고려에 따라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미적인 고려와 기능적인 고려가 융합하여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저작권법을 통한 중복보호는 가급적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⁶⁷⁾

그러나 실용품의 디자인은 물품의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또한 그것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한 또는 그 한도에 있어서만 저작물로 보는 미국법⁶⁸⁾과는 달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저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법제의 차이를 고려할 때,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응용미술작품을 좀 더 폭 넓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법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직물디자인은 분리가능성 여부에 상관 없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⁶⁹⁾ 본 판결에서 분리가능성을 기준으로 직물디자인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4) 타이프페이스登錄事件⁷⁰⁾

서체도안의 저작권등록신청반려처분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서체도안의 저작권법상 보호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해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사건의 개요와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루어진 디자인의 경우 그 미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은 관념적으로 분리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며 기능적 고려와 전적으로 무관한 미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소수의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상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세창출판사(1995), 166-171면 참조.

67) 이상정, 주29), 113-114면.

68)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69) 앞의 미국 하원보고서 55면 참조.

7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판례공보」 제19호, 2867-2870면).

1) 事件의 概要

타이페이스(인쇄용 서체) 디자이너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타이페이스(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를 피고 문화체육부에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현행 저작권법상 서체도안은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위 각 저작권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 저작권등록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原告의 主張

원고들은 타이프페이스가 저작물이며, 비록 저작물인지 여부에 의문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반려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서체도안은 타이페이스, 글자꼴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그 개발에 창작자의 정신적 노력과 많은 시간 및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개발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러한 서체도안이 실용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이유로 서체도안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창작성을 부인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의 하나라고 예시하고 있는 것도 저작권법으로 서체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하여 어떤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성립 또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달리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저작권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관청인 피고는 등록신청대상의 저작물성을 비

릇한 실제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령이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신청이 이루어지면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고, 등록신청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행한 등록신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비록 저작물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확설상 그 저작물성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명백히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므로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法院의 判斷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타이페이스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형식적으로는 저작권등록관청이 저작물의 저작권성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까지 가지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1) 타이페이스가 著作權法上의 保護를 받을 수 있는지의 問題⁷¹⁾

타이페이스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서체도안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를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써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⁷²⁾ 즉 타이페이스란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 등을 표현, 전달할 의도에서 의사전달 수단 내지 언어, 사상 등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자, 글자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표시에 시각적 효과 등을 첨가하거나 강화한 것이다.⁷³⁾

71)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72)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서체도안이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써 작성된 경우에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73)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에도 제출한 서체도안 자체를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타이프페이스는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와 같이 타이프페이스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아 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는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비록 타이프페이스가 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독창성이 나타난 부분에 한정된다. 그러나 타이프페이스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타인이 사용한 서체가 그러한 부분을 침해하였는지, 어떠한 서체도안이 다른 서체도안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창적인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글자와 문자는 문화유산으로서 만인공유의 대상이며 의사, 사상, 감정 등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기본적 수단이므로 타이페이스의 창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글자나 문자의 사용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타이프페이스 창작자에게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ㄴ) 著作權登錄官廳이 著作物の 著作物性에 관한 實質的인 審査權限까지 가지는지의 問題

법원은 신청된 물품이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을 등록관청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한

것을 주된 의도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제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가 확립되어 있거나 학설상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저작물성의 판단 문제에 대하여 등록관청에게 단순한 형식적 요건의 심사권한 보다는 조금 더 넓은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評價

타이프페이스가 저작권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선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이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 대상이 될 정도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이 경우 타이프페이스는 문자 등의 표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 등을 표현, 전달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의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약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써 작성된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타이프페이스가 응용미술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미적 요소가 실용성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앞의 한복문양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로 규정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작품의 보호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용성으로부터의 분리·독립성을 본 사건에 적용하여 저작권보호대상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법상 논의되는 분리가능성 이론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타이프페이스의 저작권등록에 관하여는 등록관청은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공부가 교부한 저작물등록증에는 1987. 6. 15 공표한 구고딕(Koo-Gothic) 도안 서체 1,021자에 대해 저작권보호를 목적으로 1988. 3. 21자로 등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⁷⁴⁾ 이는 타이프페이스를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小結

타이프페이스가 응용미술의 한 종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응용미술작품을 著作權法으로 보호하는 문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았다. 법원은 저작권법의 규정에 응용미술작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意匠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면 의장법의 여러 제한규정들이 의미를 잃게 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⁷⁵⁾ 따라서 법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만을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⁷⁶⁾ 그러나 이런 판례의 태도는 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제한 없이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로 규정하는 우리 저작권법에 비추어 볼 때 응용미술작품 보호에 있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응용미술작품의 보호에 관하여 입장이 나누어짐에 따라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⁷⁷⁾ 외국의 이론이나 법규정을 특별한 근거 없이 인용하지 않고 우리 저작권법

74) 전자신문, 1994. 7. 21자.

75) 대한방직 사건에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민사법원 판결이 이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76) 대한방직 사건과 타이프페이스 등록 사건에서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의 해석에 충실할 때,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별다른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⁷⁸⁾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취하는 입장보다는 폭 넓은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타이프페이스는 다른 응용미술작품과는 다른 고유의 특징⁷⁹⁾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⁸⁰⁾

우선 서체도안의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일, 유사 범위에 해당

77) 저작물성에 반대하는 견해에는 이호웅, “타이프페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1991)”, 저작권심의회조정위원회, 45면, 박문석, “저작권과 글자꼴의 법적보호(3)”, 「인쇄신문」(1991. 11. 22자) 4면 등이 있고, 찬성하는 견해에는 장인숙,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저작권학회보」 40호(1990. 5.), 1면 이하, 한승헌 “Typefaces의 보호와 저작권”,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 394면, 박성호, “글자꼴 저작권 불인정 판결에 할 말 많다”, 「출판저널」 148호(1994. 5.), 14면 이하 등이 있다.

78) 박성호, 위의 글, 15면에서 “위 판결에서 청구한 것은…문화체육부는 저작권등록신청을 심사하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글자꼴의 저작물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글자꼴의 저작물성 여부는 이 사건의 부수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었는데…판결이유를 보면 정작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부수적 의견에 대해서만 과거 일본의 하급심 판결을 상당 부분 베껴가면서…장황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79) 서체도안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타인이 사용한 서체가 그러한 부분을 침해하였는지, 어떠한 서체도안이 타 서체도안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창적인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등의 판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과 또한 타이페이스의 창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인정할 경우 글자 내지 문자의 사용에 지나친 제약이 가하게 되고 타이페이스 창작자에게 문자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참조.

80) 자세한 내용은 앞의 타이페이스 등록사건(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에 대한 박성호 변호사의 상고이유보충서 참조.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개의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의 문제이다. 저작권 침해를 판별하는 요건 사실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침해자의 피침해저작물에의 '接近可能性'과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의 '實質的 類似性'이다. 저작권침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두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상화된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프페이스 저작물의 경우에만 특별히 동일, 유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창작물인지 또는 2차적 저작물인지 또는 단순히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저작물의 일반에 걸쳐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이것 또한 앞서 본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판단,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자 독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서체가 있으므로, 특정의 글자꼴을 둘러싸고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을 해하는 정도로 문자사용에 지나친 제약이 가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타이프페이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각국이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보호방법을 고찰한다면 이러한 특수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하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81) 이에 대해서는 本稿 제5장에서 후술하고 있다.

제4장 타이프페이스 保護에 관한 國際傾向

1. 序說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에 관하여 각 나라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가 다를 뿐 아니라 보호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인정할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론이 나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체결된 국제 협약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각 나라의 저작권 관련 입법과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관한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원의 태도를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대해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방법과 법적 근거를 들고 있거나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에 관해 소개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 법을 보다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저작권법에 의하지 않고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기타의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타이프페이스 保護를 위한 國際的 動向

(1) 序說

타이프페이스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제협약은 “타이프페이스의 保護 및 그 國際寄託에 관한 빈 協定(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이다. 그러나 빈 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소수이므로 각국이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동 협정보다는 타이프페

이스가 속하는 응용미술작품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文學的 및 美術的 著作物の 保護를 위한 베른 協約(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나 “世界著作權條約(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産業財産權 保護를 위한 파리 條約(The Paris Convention for the Industrial Property 1883)”, “産業디자인의 國際寄託에 관한 헤이그 條約(The Hague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1934)”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조약에서 응용미술 작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빈 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이포페이스 보호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文學的 및 美術的 著作物の 保護를 위한 베른 條約

1) 序說

동 조약은 18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성립되어 1887년 12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또한 높은 수준의 보호와 풍부한 내용의 권리들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는 개별국가 내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의 의미를 넘어서 국제적인 보호를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동 조약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다.

2) 保護받는 著作物

동 협약 제2조는 보호받는 저작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⁸²⁾에서는 ‘문

82)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에는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서

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문학적, 학술적 및 미술적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정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문학, 학술 및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포함한다는 점과 표현의 방법 혹은 형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응용미술작품은 보호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동 협약은 이들 저작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보호의 조건은 동맹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다.⁸³⁾

3) 保護期間

베른 조약은 응용미술작품의 보호기간을 결정할 권한을 동맹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1967년 스톡홀름 개정에서 추가한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맹국들의 권한은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이들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최소한 2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⁸⁴⁾ 이와 같이 최소한의 보호기간을 설정

적, 소책자 및 기타의 문서; 강연, 연석, 설교 및 기타 같은 성질의 저작물; 연극적 혹은 악극적 저작물, 무용적 저작물 및 무언극; 가사의 유무를 불문한 음악적 작곡, 영화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적 저작물, 소묘, 그림, 건축, 조각, 판화 및 석판화의 저작물;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적 저작물; 응용미술의 저작물; 도해, 지도, 설계도, 스케치 및 지리학, 지형학, 건축 혹은 학술과 관련한 3차원적 저작물과 같은 문학적, 학술적 및 미술적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제2조 제1항.

83) “응용미술의 저작물 및 산업의장과 모형에 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저작물, 의장 및 모형들이 보호되는 상태는 이 협약 제7조 4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맹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국에서 단지 의장 및 모형으로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동맹국에서도 그 국가가 의장 및 모형에 대하여 주어지는 오직 그러한 특별보호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국가에서 그와 같은 특별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저작물들은 미술적 저작물로 보호된다.” 제2조 제7항.

84) 사진적 저작물과 미술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한 것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동맹국과 단지 의장(등록에 의하여)으로만 보호하는 동맹국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⁸⁵⁾

(3) 世界著作權條約

세계저작권조약은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모든 나라에서 확보하고 나아가서 인간 정신의 산물에 대한 보급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하며 국제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서명되었으며 1971년 파리에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조약은 제1조에서 그 보호대상을 '어문저작물, 음악·연극·영화저작물, 회화, 판화와 조각 등을 포함하여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응용미술작품을 그 보호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4조 제3항에서 응용미술작품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그 보호기간이 1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저작권조약도 응용미술작품의 보호 여부를 체약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된다.⁸⁶⁾

(4) 産業財産權 保護를 위한 파리 條約⁸⁷⁾

파리 조약으로 내국인이 아닌 사람도 프랑스에서 최고 15년까지 새로운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파리 조약의 가맹국이지만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내의 회사

기간의 결정은 동맹국의 법률로 정한다. 다만, 그 보호기간은 이들 저작물의 제작시로부터 적어도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제4항.

85) 허희성, 「베른協約逐條概說」, 일신서적출판사(1994), 83면.

8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14), 22면.

87) Edward Gottschall, *The state of the Art in Typeface Design Protection*, Visible Language, v.19, No.1, (1985), p.150.

들은 다른 가맹국에서 그 보호를 구해야 한다.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독일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인정된 新規性(novelty)과 獨創性(originality)이다. 그러나 보호를 위해 제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에 관해 판단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 의해 제기된 침해소송의 과정에서만 신규성과 독창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타이프 페이스는 권한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로부터 보호되며,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소유가 되기 전에 등록되어야 한다.

(5) 産業디자인의 國際寄託에 관한 헤이그 條約⁸⁸⁾

헤이그 조약은 지적재산권의 영역 중 디자인에 관하여 특별히 체결된 조약으로서 보호방법으로 디자인의 국제기탁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은 15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이집트, 독일, 벨기에,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수리남, 튀니지, 베트남, 프랑스, 인도네시아,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가 가입하고 있으나 충분한 가입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이 의문시된다. 가입국들 중 하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는 자신의 子會社를 이들 중 한 나라에 설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회사의 운영 비용과 세금을 고려해 보면 헤이그 조약하에서의 보호가 그 보호가 가져다 주는 효용보다 더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문가에 의해 인정된 新規性(novelty)과 獨創性(originality)이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일반 대중의 공유가 되기 전에 등록되어야 한다.

(6) 타이프페이스의 保護 및 그 國際寄託에 관한 빈 協定

1) 타이프페이스에 관한 國際協定 制定의 必要性⁸⁹⁾

88) Edward Gottschall, 앞의 글, 151면.

89) André Françon, *The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수 년에 걸쳐 타이프페이스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것을 주장해 왔다. 타이프페이스 제작에는 장시간의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권한 없이 행하는 복제는 창작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침해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는 이제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타이프페이스가 산업디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이프페이스 제작자의 이익이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국제조약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들은 그 보호 대상과 보호범위, 보호조건, 보호기간 등을 당사국들의 국내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국내법들간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면 산업디자인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정도의 통일적인 국제적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지적재산권의 영역 중 디자인에 관하여 특별히 체결된 조약으로서 헤이그 조약이 있으나 동 조약은 충분한 가입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이 의문시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타이프페이스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관한 특수한 국제협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1973년에 빈 협정이 체결되었다.

2) 빈 協定 締結過程

타이프페이스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필요를 느낀 유럽과 미국의 활자제조회사들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현 WIPO의 전신인 BIRPI : Bureaux internationaux ré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를 움직여 국제회의를 소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COPYRIGHT (May, 1976), 129면 참조.

집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 회의는 국제타이포그래피협회의 제창으로 활자주조업자가 인쇄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8개국의 공업소유권관계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1960년부터 6회에 걸쳐 회의를 거듭하였다.⁹⁰⁾ 회의를 거듭하면서 초안이 서서히 작성되었으며, 1973년 빈 회의에서 다수의 조항을 만든 결과 그 해 6월 12일 빈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의 보호기간에 관련된 의정서(The Protocol to the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Concerning Term of Protection)”, “시행규칙(the Regulations under that Agreement)”으로 이루어져 있다.⁹¹⁾

본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산 마리노, 스위스, 영국이고,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프랑스,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산 마리노, 스위스의 7개국이다. 동 협정은 5개국이 비준 혹은 가입문서를 기탁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발효되는 데⁹²⁾ 현재 독일과 프랑스만이 비준하고 있어서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⁹³⁾

3) 빈 協定의 體系 및 그 內容

동 협약은 서문과 몇 개의 도입 조항을 두고 난 후에 국내적 보호, 국제적 기탁, 관리규정, 분쟁, 개정 및 수정, 종결 규정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하에 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본다.

90) 한승헌, “Typeface의 보호와 저작권”, 「출판연구」, 창간호(1990), 269면.

91) André Francçon, 주89), 130면.

92) 동 협정 제35조 제1항.

93) WIPO, COPYRIGHT(JANUARY, 1988), p.11.

(가) 타이프페이스의 定義

동 협정 제2조는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설명과 함께 타이프페이스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타이프페이스란 악센트 부호·구두점과 같은 부속물을 수반한 문자들 및 알파벳들, 숫자들과 부호·과학기호 같은 도형적 기호들, 또는 테두리·꽃무늬·당초문양 같은 장식들에 나타나는 일련의 디자인(sets of designs)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이들 문자, 숫자, 기호, 장식들은 인쇄기술(graphic technique)을 통해 문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순전히 기술적 필요(technical requirements)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의 디자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타이프페이스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제2조는 그 보호대상이 개개의 디자인이 아니라 한 벌의 문자에 통일적으로 존재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런 한 벌의 문자는 인쇄기술적 방법을 통해 문장을 구성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타이프페이스도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등 한 벌의 문자에 관한 디자인이고 이들 문자들도 인쇄에 의해 문장을 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협약에서 지칭하는 타이프페이스에 해당한다.

(나) 國內的 保護

동 협정은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체약국들이 국내에서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保護의 原則과 그 類型

보호의 원칙과 그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는 동 협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 동 조는 모든 체약국이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여야 하지만 그 법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각 당사국의 자율에 맡겨진다고 하고 있다. 즉 체약국은 특수한 국제기탁제도를 확립하거나, 체약국의 국내 의장법에

마련된 기탁제도를 적용하거나, 국내 저작권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보호는 중첩될 수 있다.

동 조항에 의해서 각국은 국내 사정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유연성 있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ㄴ) 保護되는 自然人과 法人

특수한 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국내 의장법을 적용하여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체약국에서 동 협정이 마련하고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체약국에 거주하거나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⁹⁴⁾ 그러나 그 국가에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산업상 혹은 상업상의 영업소(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를 가지는 자연인과 법인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⁹⁵⁾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경우에 보호되는 자연인과 법인을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들이 적용되는데 그 중 하나가 국적이다. 따라서 체약국 중 어느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타이프페이스의 모든 창작자는 보호된다. 창작자의 국적이 동 협정의 체약국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창작자가 체약국 중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 최초로 타이프페이스를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때에 그 창작자인 자연인 혹은 법인 역시 보호된다. 다만 동 협정에서 발행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복수 국가에서 동시발행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경우, 체약국은 어느 한 체약국에 통상의 거소나 주

94) 동 협정 제4조.

95) 동 협정 제6조.

소를 가지고 있는 타이프페이스의 창작자를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타이프페이스 창작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달리 임의적인 규정인바, 각 계약국은 이런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지 여부를 비준 혹은 가입 문서를 기탁할 때에 명확히 하여야 한다.⁹⁶⁾

또한 제4조 제3항은 법인이 아니라도 국내법에 의해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의 단체는 동 협정에서 말하는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국은 이러한 단체 대신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독일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이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독일법하에서 동 협정의 적절한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⁹⁷⁾

(c) 內國民待遇

각 계약국은 동 협정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게 당해 계약국이 그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보호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⁹⁸⁾ 제5조는 이러한 내국민 대우의 일반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규정이다. 반면에 제5조 제2항은 국내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는 경우에 필요한 형식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저작권조약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⁹⁹⁾

(c) 保護의 條件¹⁰⁰⁾

96) 동 협정 제34조.

97) André Françon, 주89), 131면.

98) 이 경우에 그 보호의 종류는 동 협정 제34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언에 의해 정해진다.

99) André Françon, 주89), 131면.

100)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 제7조 보호의 조건들

(1)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는 타이프페이스에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혹은 양 조건 모두를 필요로 한다.

(2) 타이프페이스의 신규성과 독창성은 그것의 양식(style) 혹은 전체적인 모습과

제7조는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의할 때 각 당사국은 원하는 바에 따라 타이프페이스의 독창성(originality)이나 신규성(novelty) 혹은 양자 모두를 보호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독창성이 저작권적인 보호 측면에서 요구된다면, 신규성은 산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호의 조건을 규정한 동 조는 저작권법적 혹은 의장법적 보호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제3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¹⁰¹⁾

당사국은 임의적으로 독창성이나 신규성을 보호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 두 가지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동 조 제2항에서는 객관적이고 보다 타당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있는 직능단체가 인정한 기준(the criteria recognized by the competent professional circles)에 의해 타이프페이스의 스타일과 전체적인 모습과 관련하여 그 신규성과 독창성을 판단할 수 있다.

(㉞) 保護의 內容

타이프페이스의 소유자는, 인쇄기술에 의해 문장을 구성하는 수단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를 금지할 수 있다.¹⁰²⁾

이와 같은 금지는 타이프페이스의 본질적 모습이 인식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순수한 기술적 방법에 의해 변형이 된 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¹⁰³⁾ 그러나 타이프페이스를 취득한 사람이 문장을 구성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타이프페이스의 요소들을 만드는(making) 행위는 동 조에서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⁰⁴⁾

관련하여, 필요하면 자격 있는 직능단체에 의해서 인정되는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01) André Françon, 주89), 131면.

102) 동 협정 제8조 제1항 (i).

103) 동 협정 제8조 제3항.

이러한 타이프페이스의 복제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¹⁰⁵⁾ 이 때에 행위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¹⁰⁶⁾

동 조 제5항은 저작권 협약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 동 조항은 동 협약 내에서의 저작권남용의 개념을 규명하고 일정한 경우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보호되는 타이프페이스 이외의 어떠한 타이프페이스도 공공이익상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 체약국은 이 협약에 의해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법적 조치는 타이프페이스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b) 保護期間

보호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은 몇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각각의 기간은 연장될 수가 있으나 이것은 오직 타이프페이스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다.¹⁰⁷⁾

베른 협약에서 25년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세계저작권협약에서 10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디자인의 보호기간은 다른 저작물의 보호기간보다 단기인 것을 알 수 있다.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에 대하여 빈 협약도 15년의 단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연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의정서의 비준을 통해서 그 기간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기간의 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¹⁰⁸⁾

104) 동 협정 제8조 제4항.

105) 동 협정 제8조 제1항 (ii).

106) André Françon, 주89), 131면.

107) 동 협정 제9조.

108)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의 보호기간에 관련된 의정서 제1조.

(ㄱ) 重複的 保護¹⁰⁹⁾

국내법이 동 협정의 규정들보다 장기의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동 협정이 국내법적 보호를 배제하지는 않으며, 다른 국제조약에 의한 보호의 경우에 대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國際的 寄託

빈 협정은 제2장 제12조에서 제25조에 걸쳐 국제적 기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단 이러한 국제적 기탁의 효력은 적어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3개국이 특수한 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혹은 국내 의장법에 규정된 기탁을 적용함으로써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¹¹⁰⁾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국제기탁은, 특수 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국내 의장법에 규정된 기탁을 적용함으로써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려는 계약국에서, 같은 일자에 행해진 국내기탁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또한 계약국은 권리의 실시를 위하여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 이상의 형식을 요구할 수 없다.¹¹¹⁾

국제기탁은 국제기탁일자로부터 최초 10년 동안 효력을 가지며 국제기탁의 소유자가 제출한 갱신요청에 의해 5년간 연장할 수 있다.¹¹²⁾ 그러나 국제기탁의 갱신은 계약국의 국내법에서 정해진 최대의 보호기간이 종료한 후에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¹¹³⁾ 즉 국제기탁은 국내기탁보다 장기간이 될 수는 없다.

(ㄹ) 管理規程 및 終結規定

동 협정은 협정의 관리와 개정 및 수정, 종결에 관하여 제4장에서 제6장에 걸

109) 동 협정 제10조.

110) 동 협정 제35조 제3항.

111) 동 협정 제18조.

112) 동 협정 제23조 제1항.

113) 동 협정 제23조 제6항.

쳐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同盟(Union)을 구성한다.¹¹⁴⁾ 이러한 동맹의 구조는 제26조에서 제28조에 걸쳐 나타난다. 동맹의 주요기관은 총회(Assembly)¹¹⁵⁾이지만 일반적인 관리사무의 다수는 WIPO 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이 행하게 된다.¹¹⁶⁾ 제28조는 재정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3. 外國의 動向

(1) 미국

1) 序說

미국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응용미술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요건을 그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타이프페이스가 미국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의 범위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법원은 타이프페이스에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러한 견해를 보여주는 몇 개의 판결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판결을 부정하는 주장도 오늘날 등장하고 있으며, 판결이 내려진 것이 이미 상당 기간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새로운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규정과 기존 법원의 입장, 이에 대한 반대 견해, 최근의 경향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14) 동 협정 제1조.

115) 동 협정 제26조.

116) 동 협정 제27조.

2) 著作權法

(가) 規定

저작권법¹¹⁷⁾은 “회화, 도화 및 조각 저작물(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을 저작권의 보호객체로 규정하며, 여기의 회화, 도화 및 조각 저작물에 “평면적 및 입체적인 순수, 그래픽 및 응용미술의 저작물(works of fine, graphic and applied art) 등이 포함된다”¹¹⁸⁾고 한다. 또한 실용품(useful article)의 디자인은 그것이 물품의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 가능하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을 때, 오직 그 한도에서만 회화, 도화 및 조각 저작물로 본다고 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나는 실용적인 면으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적인 존재가능성이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실용적인 면과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立法趣旨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를 보여주는 하원의 보고서¹¹⁹⁾는 응용미술작품에 대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

101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은 수정된 어구를 채택함에 있어 위원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과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산업디자인작품을 구별하는 명백한 기준을 찾고자 노력했다. 평면적인 회화나 도화는 직물, 벽지, 용기와 같은 실용품에 인쇄되거나 이용되어도 회화나 도화로서 인식될 수 있다. 또 조각이 공업제품의 장식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Mazer사건¹²⁰⁾에

117) 제102조 a (5).

118) 제101조.

119) The House Report on the Copyright Act of 1976. Rep. No.94-1476, 94th Cong., 2d Sess. p.55. 이상정, 주29), 101면에서 재인용.

120) 원고 Stein은 춤추는 남녀모습을 小像으로 만들어 이를 저작권법에 등록한 후,

서와 같이 미술저작물로서의 독립성을 잃지 않고서 물품 속에 합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공업제품의 형상은 미적인 만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본법에 의한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위원회의 의도이다. 자동차, 비행기, 부인의복, 조리기, 텔레비전 수상기, 기타의 공업제품의 형상은, 제품의 실용적 측면으로부터 분리해서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한 그 디자인은 본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물품의 실용적 측면으로부터의 분리가능성 여부나 독립성 여부는 디자인 그 자체의 성질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물품의 외관이 미적 고려하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반대로 기능적 고려하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오직 실용품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체가 확인될 수 있는 요소(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의자 뒷면의 조각이나 은식기의 꽃무늬의 양각 디자인과 같이 입체적 디자인이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는 오직 그러한 요소에만 미치며, 실용품 그 자체의 전반적인 형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평면적인 회화나 도화 또는 조각과는 달리 공업제품의 디자인은 그것이 미적 만족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업제품의 디자인은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실용적 측면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

이 소상에 램프의 갓, 전기배선, 전구소켓을 붙여 테이블 램프를 만들어 이를 대량 생산, 판매하였다. 피고 Mazer 등은 같은 모양의 램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Stein은 Mazer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최고 법원은 대량생산, 판매할 의도로 제작되고 또 실제로 판매된 소상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술과 산업은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미술저작물이 기능적 물품에 구체화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며, 또 의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작권보호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실용성과 비실용성을 동시에 갖는 물건의 저작물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의 취득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1954. 3. 8, 74 S.Ct. 460, 347 U.S. 201.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리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념적인 분리만으로도 보호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3) 判例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에 관하여 초기의 판례들은 이를 특허법에 의해 보호하고자 했으며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하여 법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 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스미스 事件¹²¹⁾

스미스 사건에서 그 재결을 행한 당시의 특허청장은 “창작자가 그 전체에 걸쳐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새로운 일련의 활자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 제품의 미적 가치가 그 제품에의 광범한 수요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독점권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여 긍정적 입장을 펴고 있다.

(나) Goudy v. Hansen¹²²⁾

이 사건에서 연방재판소는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에 부여된 특허가 무효라고 확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알파벳과 숫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문자나 숫자는 수 세대에 걸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특허에 의해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적인 특성과 특징적인 장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그 보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21) 130 O.G. 505: 1905 C.D. 7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29), 27면에서 재인용.

122) Circuit Court of Appeals, First Circuit. November 15, 1917. (247 F. 782).

(다) *Eltra v. Ringer*¹²³⁾

Eltra Corp.은 자기 회사가 시판하고 있는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의 등록을 저작권청에 신청했으나 저작권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Eltra Corp.은 저작권청장 Ringer을 상대로 등록신청을 받아들여도록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 항소심, 연방재판소는 모두 타이프페이스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그 근거가 상이하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법원은 타이프페이스가 미술저작물임을 인정하면서, 타이프페이스에 저작권성을 인정할 수 없도록 1909년 법¹²⁴⁾을 해석한 저작권청 규칙 202.1(a)¹²⁵⁾와 202.10(c)¹²⁶⁾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록 저작권청이 법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도 의회에 의해 묵인된 오랜 관행에 의해 타이프페이스의 등록을 거절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법원은 의회가 공청회나 보고서에서 타이프페이스가 보호받기에 부적합하다고 가정하며 아직까지 이를 위한 어떠한 새로운 입법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묵인의 근거를 찾고 있다.¹²⁷⁾

항소법원은 저작권청 규칙 202.10(c)가 1909년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123)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urth Circuit. June 14, 1978. (579 F.2d 294, 297).

124) 1909년 법 제5조(g)에서는 ‘미술저작물(work of art)’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25) 저작권청 규칙 202.1(a)는 “이름, 제명, 슬로건 등의 문구, 평범한 심볼 또는 디자인, 인쇄상의 장식, 문자 또는 색채의 단순한 변형물, 성분이나 내용을 단순히 열거한 것”에 대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6) 저작권청 규칙 202.10(c)에서는 “물품의 유일한 본질적 기능이 실용적인 경우에는, 그 물품이 독특하고 미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미술저작물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용품의 형상이 미술적인 조각, 부조, 회화와 같이 실용품과 명확히 구별되고 동시에 미술저작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

127) Merville B. Nimmer,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New York, M. Bender(1995), p.2-182.

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타이프페이스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론을 취하고 있다.

4) 學說

Eltra판결에서 보여주고 있는 법원의 판단과는 반대되는 견해들이 있다. 입법의 부작위로부터 추론된 의회의 목인이 법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인데, 의회의 입법부작위는 행정규칙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목인과는 상관없는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행정청 자신이 그 규칙에 대해 옳다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 1909년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Eltra사건에서 법원이 보여준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는 의문이다.¹²⁸⁾

Eltra사건에서 법원은 타이프페이스가 미술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를 실용적인 작품(utilitarian work)이라고 보고 실용적인 면으로부터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정하고 있다. 이 때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Mazer v. Stein판결¹²⁹⁾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촛대는 그 장식적 부분이 실용적 부분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가 용이했다.¹³⁰⁾ Eltra사건 당시에 Mazer사건은 실용작품에 저작물성을 인정한 선구적 판결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Eltra판결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용적인 부분과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작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후에 관념적인 분리가능성을 그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려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만약 오늘날 법원이 다시 Eltra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면 과거처럼 당연히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할 수

128) Merville B. Nimmer, David Nimmer, 주127), 2-183-184면.

129)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주 120) 참조.

130) Terrence J. Carroll, 주23), 156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¹³¹⁾

또한 Eltra사건의 판결은 1976년 저작권법의 입법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특히 94회 하원의 보고서가 1976년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이 되었는데 이 하원 보고서는 타이프페이스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¹³²⁾ 법원은 Eltra사건에 1909년 저작권법을 적용하면서도 이 하원의 보고서를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부정하는 근거로 들었다. 1976년 법상 저작권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Eltra법원이 하원보고서를 인용한 것이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 대한 고려, 특히 타이프페이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하원의 보고서가 Eltra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만큼의 중요성을 지니는지는 의문이다.¹³³⁾

저작물이 일단 공유로 되면, 보통법이나 제정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의 문학 작품이 공유가 될 경우에 이를 인쇄한 타이프페이스까지 당연히 공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독창적인 타이프페이스로 공유의 문학 작품을 복제한 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타인이 문학 작품에 포함된 문구를 복제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작품의 각 페이지를 사진 복제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타이프페이스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¹³⁴⁾

131) 위의 글, 160면.

132) 제94회 국회의 하원보고서 2233에서 타이프페이스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과 저작권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디자인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을 제시하고자 한다…따라서 위원회는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의 보호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본 법안과 101조에 규정된 구별기준을 적용해 볼 때 위원회는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회화, 도안 및 조각저작물’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있다.”

133) Terrence J. Carroll, 주23), 157-159면.

134) Merville B. Nimmer, David Nimmer, 주127), 2-183-184면.

5) 타이프페이스 保護를 위한 動向

미국에서 타이프페이스의 저작권등록을 거절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의 저작권자가 동 디자인에 따라 제작된 인쇄장비를 독점하게 되어 인쇄산업 또는 인쇄장비산업에서 부당한 경쟁제한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오늘날 처럼 탁상인쇄가 일반화된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도 프린터를 이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이프페이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청은 디지털화된 타이프페이스 또는 각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폰트데이터(typefont data)에 대하여도 저작권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¹³⁵⁾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종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타이프페이스를 (의장)특허법으로 보호하여 왔다. 다만 최근에 타이프페이스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¹³⁶⁾

이 밖에도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디자인법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1976년 법 성립 이후에 제출되고 있는 법안들¹³⁷⁾은 특허권적 심사 절차가 아니라 저작권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구하려고 한다.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흔한 디자인, 오로지 '실용적인 기능에 의해 규정된' 디자인은 보호받지 못하며,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법률에 기한 디자인 권리는 특허법,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에 기한 여하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보호되는 디자인인지 모르고 물품을 복제하는 것은 침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디자인법의 제정에 대해 미국 손해보험업계와 출판업계들은 반대하고 있다. 우선 산업디자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현재로서 이미 충분하다고 보아 제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다. 또한 의장특허법

135) Ralph S. Brown and Robert C. Denicola, Cases on Copyright, Foundation Press (1990), p.183.

136) 이상정, 주29), 48면.

137) H.R. 902(1989. 2. 7), H.R. 3017(1989. 7. 27), H.R. 3499(1989. 10. 19).

상의 장식성 요건이나 저작권법상의 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들도 산업디자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업디자인법은 그 '산업적'인 성격에 의해 자동차의 프론트 글래스나 펜더, 교환 부품 및 제품의 포장 등 기능적 디자인의 보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부품이 디자인법의 성립을 통해서 보호받게 되면,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한 메이커나 상점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이보다 비싼 원래 메이커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손해보험업계는 이를 이유로 산업디자인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출판업자는 산업디자인법에 의해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을 보호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을 출판할 때에 부담하게 되는 책임에 대해 불안을 품고 있다.

이상의 반대론을 참작하여 하원 제1790호 법안(H.R. 1790)인 “The Design Innovation and Technology Act of 1991”이 제102회 국회에 제출되었다.¹³⁸⁾ 동 법안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청에 등록된 타이프 폰트 등의 실용품의 산업 디자인을 10년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동종의 물품과 관련된, 선행의 디자인을 능가하는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 변화는 사소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동 법안에 따르면 출판업자는 그가 출판한 인쇄물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활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인쇄물의 제조, 수정, 반포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제기당하지 않는다. 또한 디자인의 등록자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기한 권리를 취득하면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어 디자인권자에게 특허법 및 저작권법에 기한 동시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동 법안은 보험회사의 풍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한 로비활동의 결과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¹³⁹⁾

138) 전문이 BNA's Patent, trademark & copyright Journal vol. 41 543면에 게재되어 있다.

139) 이상경, 주29), 127-129면 참조.

(2) 일본

1) 序說

일본 저작권법은 보호대상으로 응용미술작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응용미술작품은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해 보호된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타이포페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기가 어려웠고 판결들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법에 의한 보호는 심사의 지연, 절차이행의 불편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그 밖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 著作權法에 의한 保護

(가) 著作權法 規定

일본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¹⁴⁰⁾ 여기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에는 미술공예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¹⁾

이와 같은 저작권법의 규정을 살펴볼 때 그 해석상 미술공예품을 제외한 응용미술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통설이며 판례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¹⁴²⁾ 공업적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창작된 제품디자인은 별도의 의장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이들에게까지 확대시키게 되면 보호요건이나 보호효과 등이 상이한 두 법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도 동일한 견해를 취하게 된다.¹⁴³⁾

140) 제2조 제1항 1호.

141) 제2조 제2항.

14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14), 36면.

143) 이상정, 주29), 60면.

우리 저작권법과는 달리 일본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을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미술저작물의 범위는 순수미술에만 국한되고 따라서 타이프페이스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문자 하나하나의 서체 보호가 아니라 한 벌의 문자의 서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은 도면으로 표현한 디자인으로서 보통의 미술저작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은 문자에 대한 미적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감상성이나 순수미술성 등이 반드시 저작물의 성립요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¹⁴⁴⁾¹⁴⁵⁾

한편,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으며, 그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절충적 견해를 취하는 입장도 있다.¹⁴⁶⁾

144) 東京지방법판소는 비디오게임의 “팩맨”사건에서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1호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이라는 개념도 엄격히 구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수이고, 각 저작물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가를 확정할 실익은 없다. 지적, 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창작된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와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창작된 것이, 예술작품으로서 감상되든 학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든 오락적 목적으로 전적으로 이용되든 실용목적으로 이용되든 또 본건에 한해서 말하자면, 유희목적으로 이용되든간에 그것은 저작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東京지방법원 1984. 9. 28 판결, 「無體裁集」 16권 3호 676면. 牛木理一, 「意匠法の研究」, 發明協會(1994), 431면에서 재인용.

145) 牛木理一, 앞의 책, 431면.

14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14), 37면.

(나) 判例

(ㄱ) 디자인 書體事件¹⁴⁷⁾

a) 事實關係

원고는 'Yagi Bold' 및 'Yagi Bold Double'이라는 이름의 인쇄용 장식서체를 만들었고 알파벳 이외에 숫자와 기호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장식문자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미국의 몬센사가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 역시 서체 디자이너로서 각종 서체 디자인을 수집하여 책을 만들면서 원고의 서체를 포함시켜 본문 중에 서체의 명칭과 제작자의 이름 등을 밝혀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시판되고 있는 디자인 서체를 그대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서체의 명칭, 저작자의 이름 등 출처를 명시하기만 하면 굳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디자인 서체를 승낙 없이 이용한 것은 원고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¹⁴⁸⁾

b) 法院의 判斷

서체 디자인이 저작권성을 가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법에서 미술이라 함은 순수미술만을 가리키고, 응용미술은 미술공예품에 한하여 보호된다. 디자인 서체는 응용미술 분야에 속하기는 하나 미술공예품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147) 東京고등재판소 1983. 4. 26 판결, 최고재판소 1985. 4. 1 화해. 牛木理一, 주 144)의 책, 433-438면에서 재인용.

148) 한승헌, 주12), 264면.

②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그것이 실용적인 것일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감상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품제작의 저작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③ 서체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만인공유의 문화적 재산인 문자 등을 그 한도에서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독점하게 되어, 저작권법에 정하는 보호기간에 걸쳐 타인의 사용이 배척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타이프페이스는 미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 등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갖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특정의 문자라든가 숫자로서 이해될 수 있는 기본적 형태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본질적 제약을 받으며 정보전달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지닌다. 이 점에서 각 문자를 미술감상의 대상으로서 회화나 조각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미적 창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글씨(書)나 꽃모양으로 쓴 문자(花文字)에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글씨가 정보전달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미적인 표현을 위한 소재로서 미술감상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 서체에 저작물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⑥ 응용미술 특히 도안, 작은 모형 등은 그 산업상의 이용에 관하여 의장법 또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들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피할 경우에는 의장법 등 공업소유권제도와 조정의 배려하여야 한다. 도안 등을 회화, 조각 등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게 되면, 양 제도가 중복되어서 종래 의장법 등을 기반으로 하여 그 질서를 지켜오고 있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안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제도와 공업소유권제도 쌍방의 이점을 도입한,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이상의 조정조치의 법제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을 실용품일 때에는 미술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일품제작의 미술공예품에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량생산되는 실용품은 그것이 미적인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가지는 것이어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라고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건 각 문자와 각 문자세트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c) 最高裁判所에서의 和解

상고인과 피상고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권고에 따라, 이후에 창작된 타이프페이스를 출판물에 이용할 경우에는 창작자의 이해를 얻은 뒤에 그 성명을 표시하는 관행을 만드는 일에 노력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화해했다.

d) 評價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미적 가치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로 결정되며 또한 미적인 표현을 창작하는 데에 부여된 노력의 많고 적음 등이 저작물성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¹⁴⁹⁾ 또한 이 경우에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일품 제작의 공예품에 한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최고재판소에서는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화해로 상고인(원고)은 피상고인(출판사)에 대한 상고를 철회하고 피상고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되었다. 최고재판소가 고등재판소와 달리 화해를 권고했다고 해서, 법원이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에 저작물성을 인정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항소심까지의 판결을 확정시키지 않고 화해로 사건을 수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⁰⁾

149) 이러한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1호의 저작물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성립요건이며, 그것이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牛木理一, 주144), 436-437면.

150) 牛木理一, 주144), 437-438면.

(L) 모리사와 對 N·I·C 著作權確認 등의 事件¹⁵¹⁾

a) 事實關係

원고는 1966년 7월경 대만 등 동남 아시아용의 사진식자기용 문자판에 탑재할 문자인 아세아中명조체문자 및 아세아太고딕체문자(합계 약 8400자)에 대해서 각각 통일성 있는 새로운 서체를 완성시켰다. 원고는 이 서체를 탑재한 寫眞植字機用文字板을 사진식자기에 짜 넣어서 판매하거나 사진식자기용문자판 그 자체를 보충용으로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1979년 10월경 소외 대만公社에 대해 CG-NIC한자정보처리 전산사진식자 시스템에 탑재해야 할 문자(합계 만6천자)에 대한 서체의 제작을 의뢰하고 다음해 1980년 9월경에 이것을 완성시켜, 그 서체를 탑재한 사진식자기용 문자판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사진식자기용문자 서체인 2411자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을 원고, 피고간에서 확인할 것, 아울러 이들 문자서체를 피고가 판매하는 전산식자 시스템에 탑재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지불도 청구하였다.

b) 法院의 判斷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종래의 판결과는 약간 상이한 이유를 들어 타이프페이스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보전달 기능을 잃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평균적 일반인의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그 심미감을 만족시킬 정도의 미적 창작성을 해당 서체가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51) 오사카 지방재판소 1989. 3. 8 판결, 위의 책, 438-441면에서 재인용.

c) 評價

앞에서 본 디자인 서체사건에서 법원은 정보전달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미술감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품일 때에도 미술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품제작의 미술공예품만을 저작물로 인정하여 타이프페이스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종래의 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으로 평균적 일반인의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그 심미감을 만족시킬 정도의 미적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타이프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실용적 기능이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으므로 타이프페이스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ㄷ) 動書 書體事件¹⁵²⁾

서예가인 원고는 書154字를 써서 ‘動書’라는 출판물에 복제 기재하였고 피고는 출판물을 발행하면서 여기에 앞에서 말한 원고의 書를 원고의 성명표시 없이 복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 글씨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적, 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적, 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인지 여부는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와는 반드시 관계가 없으므로, 창작물이 실용목적에 이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저작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이유로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글자는 인쇄용 서체가 아니라 서예이기 때문에 인쇄용 서체와 달리 그 저작권성을 인정하여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

152) 東京지방법판소 1985. 10. 30 판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외국 판례선[1]」(1988), 258-264면.

호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 小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점에 대하여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 중 미술공예품만을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도 종래 저작권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품제작의 공예품만이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아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앞의 모리사와 사건에서 평균적 일반인의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그 심미감을 만족시킬 정도의 미적 창작성을 가지는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는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미적 창작성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보전달 기능을 잃게 할 정도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저작권법에 의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균적 일반인의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3)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保護

(가) 의장법에 의한 보호는 심사의 지연, 절차이행의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가 계속해서 문제되어 왔다.¹⁵³⁾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15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은 다음의 3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 타인의 상품 등 표시(사람의 업무와 관계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상품의 용기 혹은 포장 기타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등의 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의 위반을 주장하여 보호를 구하는 재판상 청구가 있었지만 종래 법원은 이에 대해 보호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에 상반되는 견해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은 과연 타이프페이스가 상품인가의 문제이다. 타이프페이스 자체를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이프페이스를 표현하는 매체인 사진식자기용문자판이나 ROM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를 구하는 견해도 있다.¹⁵⁴⁾ 이렇게 견해가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判例

(1) 타이포스 事件¹⁵⁵⁾

a) 事實關係

원고는 서체디자인의 창작, 연구에 종사해 온 디자이너로서 '타이포스 서체'라고 하는 일련의 새로운 세체를 창작하고 '사연(寫研)'이라는 회사와 라이선스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의 양도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2.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서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의 양도 등을 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최초로 판매된 날로부터 기산해서 3년을 경과한 것을 제외함)의 형태(당해 타인의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타인의 상품과 그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통상 가지고 있는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하거나 혹은 수입하는 행위.

154) 牛木理一, 주144), 445면.

155) 東京 高等 재판소 1983. 4. 28 판결, 위의 책, 445-450면에서 재인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위 서체와 매우 유사한 서체를 가지고 활자와 그 자모를 제작,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타이포스45'를 무단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b) 法院의 判斷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중의 사회협동생활상 허락될 수 없는 행위를 제1항 1호부터 6호까지 명시하고 있다.

1호에서 6호까지의 규정에 사용된 '상품'이란 용어¹⁵⁶⁾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유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유체물'에는 산소, 수소,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과 같이, 그 자체는 무정형인 것이라도 자연계에 존재하며, 용기에 담겨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일반적으로도 '상품'이란 말은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물건으로서 생산, 가공되어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有體의 동산 내지는 물건을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합치한다.

이상과 같이 '상품'이란 적어도 유체물일 것을 필요로 하고, 무체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타이포스45'가 무체물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타이포스45'가 부정경

156) 1호에서 6호까지의 규정을 보면, '상품'에 대해서 '용기포장'(1호), '원산지'(3호),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5호)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상품'은 '판매, 擴布, 수출'(1호, 3호 내지 5호), '산출, 제조, 가공'(4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쟁방지법상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②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표시에 의해 구체화된 상품주체의 신용의 남용, 훼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 형성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신용의 보유자인 상품주체, 즉 상품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입 등의 상품 취급업에 종사하는 업무주체에 한정된다.

이 사건의 인정 사실로 보건대 '타이포스45'에 의한 사진식자용문자판이라는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사연'이며, 공소인들은 이 회사에 '타이포스45'의 독점적 사용허락을 해 준 대가로,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c) 最高裁判所에서의 和解

이 사건은 受命법관의 권고에 따라 피상고인은 문제가 된 활자 및 모형을 제작, 판매하지 않으며, 상고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d) 評價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품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상품이란 유체물을 지칭하므로 東京高等裁判所는 무체물인 타이프페이스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유체물인 사진식자용문자판을 상품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호되는 상품주체는 타이프페이스 창작자가 아니라 문자판을 제조, 판매하는 자이기 때문에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상품의 개념을 유체물에 한정하는 이상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에서 화해를 권고한 것은 비록 무체물이라도 종래의 서체와 구별할 수 있는 창작성 있는 서체인 경우에는 自他상품을 식별하는 상품표시

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의 활자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¹⁵⁷⁾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판결도 등장하고 있다.¹⁵⁸⁾

(ㄴ) 東京 高等裁判所 1993. 12. 24.¹⁵⁹⁾

東京都區의 소프트하우스가 인쇄기기 제작자인 모리사와 측이 제작한 타이프페이스를 탑재한 전산식자기를 구입한 후, 이 타이프페이스를 참고하여 타이프페이스를 제작, 이를 자사 브랜드의 레이저프린터에 탑재, 판매하였던 바, 모리사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가처분을 東京지방법판소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타이프페이스가 무체물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제2심에서는 “서체가 무체물일지라도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양자의 서체는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상품’이 혼동된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1항 1호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하여 당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고려하였던 내용을 정리하면 ① 타이프페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인가의 여부 ② 문제된 타이프페이스간의 유사성여부가 그것이다. 사건은 무체물인 타이프페이스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157) 牛木理一, 주144), 450면.

158) space·invader 사건에서 법원은 상품의 개념에 관하여 좀 더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space·invader’라는 텔레비전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invader가 주역이 되어 만드는 각종영상과 게임의 진행에 따른 영상과 게임진행의 변화 모양이, 그 자체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상 2차적으로 원고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인정되어 ‘타인의 상품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보았다. 이런 견해는 움직이는 영상에 대해 ‘상품의 표시’를 확장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東京지방법판소 1982. 9. 27 판결, 위의 책, 450-451면.

15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일본의 타이프페이스 보호동향”, 계간저작권(1994, 여름호), 90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영국

1) 序說

영국에서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은 1964년의 등록디자인법(Registered Designs Act 1949)과 1956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6)에 의한 제한적 보호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68년에 시행된 디자인 저작권법(Design Copyright Act)은 1956년 저작권법 제10조(산업디자인에 관한 특별 예외)상의 미술작품의 저작권 제한을 크게 철폐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어느정도 타이프페이스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1년 이래로 영국 정부의 견해가 담긴 諮問書가 green paper 형태로 제시되어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포함하는 제문제가 논의되어 오다가 1988년 8월 1일부터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이하 CDPA라 한다)이라는 新法의 著作權章 제54조 및 제55조에서 타이프페이스를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¹⁶⁰⁾

2) CDPA(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저작권법은 타이프페이스가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글자꼴 이용자의 편의 및 글자꼴 산업 내의 경쟁질서 유지를 위하여 저작권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영국 저작권법이 모든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저작권법이

16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14)의 보고서, 30-32면.

타이프페이스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가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고 동 협정이 타이프페이스를 글자외형, 꽃장식, 장식무늬 등과 같은 장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정의하고 있으므로 타이프페이스라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타이프페이스가 예술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¹⁶¹⁾

영국 저작권법에 의해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부여되는 제한은, 우선 통상의 타이핑이나 프린팅 과정에서 타이프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용형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이 통상적 사용을 위해 타이핑이나 프린팅 장비를 보유하고, 이렇게 제작된 인쇄물 또는 유인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공, 진열하거나 공중에 전시, 배포하는 행위도 허용된다.¹⁶²⁾ 타이프페이스가 문화, 사상, 감정의 전달 수단인 문자와 결합되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 인정이 곤란하다는 의문이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의 제한은 보호기간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법은 타이프페이스 제작을 위해 고안된 장비가 판매되거나 대여된 경우에, 장비에 대해 판매한 해의 말로부터 25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타이프페이스 보호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¹⁶³⁾ 이러한 제한은 타이프페이스 산업 또는 타

161) 정상조(편),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1997), 231-232면.

162) CDPA 제54조.

① 통상의 타이핑이나 프린팅과정에서 타이프페이스를 사용하는 것.

② 통상의 타이핑이나 프린팅의 목적을 가진 장비를 보유하는 것.

③ 통상의 타이핑이나 프린팅에 의해 제작된 인쇄물 또는 유인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공, 진열하거나 공중에 전시, 배포하는 것.

163) CDPA 제55조.

특정 타이프페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가 최초로 시장에서 판매

이프페이스를 이용한 인쇄장비나 컴퓨터 장비에 관련된 산업 내의 경쟁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¹⁶⁴⁾

(4) 독일 165)

독일에서 타이프페이스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타이프페이스 개발은 중요한 산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를 위해서 이용되어 왔다.

또한 독일은 빈 협정 및 의정서의 비준서를 WIPO에 두 번째로 기탁한 국가로서 빈 협정의 취지에 따라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를 위해 1981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동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명칭은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와 그 국제기탁을 위한 빈 협정에 관한 법률(Gesetz zum Wiener Abkommen vom 12 Juni 1973 über den Schutz typographischer Schriftzeichen und ihre internationale Hinterlegung)”로서 총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1973년 6월 12일 빈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조인한 “타이프페이스 보호와 그 국제기탁을 위한 빈 협정” 및 그 시행규칙, 의정서를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제2조는 신규성과 독창성을 지닌 타이프페이스는 디자인 저작권법(의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디자인을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그 기준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프페이스의 정의는 빈 협정과 동일하며¹⁶⁶⁾, 신규성과 독창성의 판단은

되거나 대여된 경우에는, 그 해의 말일로부터 25년의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의 침해 없이 당해 장비의 제작이 가능하다.

164) 정상조, “영국저작권법하에서의 산업디자인 보호”, 계간저작권(1995, 봄호), 39면.

16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14), 33-35면 참조.

166) 제2조 (1) 1.

그 형상 또는 전체적 인상에 의해 결정된다.¹⁶⁷⁾ 위법으로 복제되거나 또는 위법으로 배포된 타이프페이스는 영업상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문장작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¹⁶⁸⁾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는 그 등록과 동시에 시작되어 10년간 존속하는데 권리자는 5년마다 최고 25년까지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¹⁶⁹⁾ 타이프페이스 디자인 등록에 관한 사무는 독일 특허청이 관할한다. 타이프페이스 디자인 등록을 위하여, 타이프페이스의 묘사와 최소한 3행 이상의 문장에 조판된 사용례를 독일 특허청에 제출한다. 타이프페이스의 명칭이 권리자에 의하여 부기되어 있으면, 영업용 번호와 병기하여 기록하고 또한 그와 같은 번호가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기록한다.¹⁷⁰⁾

이상과 같이 독일의 타이프페이스법은 빈 협정의 내용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5) 프랑스

프랑스는 빈 협정 및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 중 제일 먼저 비준서를 WIPO에 기탁한 국가로서, 타이프페이스와 관련한 특별한 기탁제도를 제정한 것은 없으며, 현행 저작권법과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著作権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종류(le genre), 표현형식(la forme d'expression), 그 가치나 목적(le mérite ou la destination)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정신적 저작물에 관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¹⁾ '가치나 목적이

167) 제2조 (2).

168) 제2조 (3).

169) 제2조 (4).

170) 제2조 (5).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1902년 3월 11일 법률에 의해 1793년의 舊法에 들어간 것으로서 조각가 또는 장식 디자이너에 의한 신규의 창작은 가령 그것이 공업적 복제를 의도하는 것이고, 그 미술적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술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즉 공업적 의장 및 모델은 다른 미술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¹⁷²⁾

정신적 저작물의 예로서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이포페이스(Euvres typographiques)도 명시하고 있다.¹⁷³⁾ 상원의 제안으로 1985년 7월 3일 법률은 제112조의 2에 타이포페이스를 추가했다. 이와 같은 입법은 프랑스가 1975년에 비준한 1973년 6월 12일의 빈 협정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상 보호는 무방식주의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타이포페이스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빈 협정 제7조의 규정은 “자격 있는 직능단체에 의해 인정된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므로¹⁷⁴⁾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타이포페이스의 보호기간은 다른 저작물의 통상의 존속기간과 같다. 따라서 저작자의 생존 중 및 사후의 50년간 존속한다.¹⁷⁵⁾

2) 意匠法

1992년 법전 제5권(디자인 및 모델) 제511조의 1은 “디자인 또는 모델의 창작자 또는 승계인은 本券이 정한 조건하에서, 당해 디자인(2차원적인) 또는 모델(3차원적인)을 실시하거나 판매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그 밖의 법률의 규정 특히, 제1권(저작권) 및 제3권(총칙)에 의한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

171)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CPI), Art. L. 112-1.

172) 이상정, 주29), 142면.

173) CPI, Art. L. 112-2.

174) A. Lucas & H.-J. Lucas, TRAITÉ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 ARTISTIQUE, Litec(1994), p.128.

175) CPI, Art. L. 123-1.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⁶⁾ 즉 이 법률은 디자인 또는 모델에 대해 다른 정신적 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보호를 마련하고 있다.

본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실질적 요건으로 신규성이 필요하다. 제511조의 3은 보호대상으로서 “신규의 디자인, 신규의 모델 및 신규성을 발생시키는 현저하며 인식가능한 외형에 의하거나, 또는 독자적이며 신규의 외관을 발생시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외부적 효과에 의해, 유사의 물품에서 구별되는 신규의 공업제품”을 규정함으로써 신규성을 요건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의장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는 기탁이 있어야 한다. 제511조의 5는 적법하게 기탁된 디자인 또는 모델만이 본법이 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의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의장을 기탁하여야만 한다. 기탁이 되면 의장의 기탁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저작자 또는 권리자로 추정되고¹⁷⁷⁾, 기탁일 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탁 이전에는 의장법에 의거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② 기탁 후 공표되기 이전에는(즉 의장이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침해소송에 있어서 기탁자는 피고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기탁되고 공표된 후에는 독자적 창작임을 입증하는 것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기탁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청구인은 자기가 그 의장을 창작했다는 것 또는 창작자로부터 그것을 취득하였다는 것 및 피고가 악의로 그것을 모방 또는 모조한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176) CPI, Art. L. 511-1.

177) CPI, Art. L. 511-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또는 모델에 관한 권리는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당해 디자인 또는 모델의 최초의 기탁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당해 디자인 또는 모델의 창작자로 추정된다.”

안된다.¹⁷⁸⁾

이상과 같이 의장법에 의한 보호의 경우에 신규성과 기탁이 요구되지만, 기탁할 때에 신규성에 관한 실체심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신규성의 문제는 침해소송시에 제기된다. 파리 협약 및 베른 협약 체결국의 국민은 프랑스에 대하여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¹⁷⁹⁾¹⁸⁰⁾

(6) 小結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관하여 각국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명문으로 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보호를 확실히 하고 있다.

미국은 응용미술작품을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지만 법원을 위시하여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상 실용품의 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되나 타이프페이스가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인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적용한다면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근래에 제출되는 법안들이 타이프페이스에까지 저작권법적 보호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저작권법이 그 보호대상으로 응용미술작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

178) 이상정, 주29), 139-140면 참조.

179)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해 저작자는 저작물의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률이 그들의 국민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여하는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다.

180) 牛木理一, “タイプフェイスの保護”, *パテント*(1991. 8.), 31면 참조.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주14), 35면에서 재인용.

으므로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반면에 의장법에 의해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법문상 타이프페이스를 명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보다는 그 보호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응용미술작품을 제한적으로만 보호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보다는 넓게 보호하여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응용미술작품만을 보호하는 미국처럼 분리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우리 법상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¹⁸¹⁾은 우리 법 규정 자체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려는 일본에서의 동향을 살펴볼 때, 일본과 유사한 부정경쟁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181) 本稿 제3장 3 (4) 참조.

제5장 著作權法 이외의 타이프페이스 保護方案

1. 序說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의 보호 이외에도 의장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한다. 이들 법은 저작권법과 동시에 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저작권법 이외에 타이프페이스의 보호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意匠法에 의한 保護

의장법은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²⁾ 다시 말하면 의장은 공산품의 장식적, 미적 효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외관과 그 심미적, 전체적 효과를 의미한다.¹⁸³⁾ 의장법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의장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물품에 化體되어야 비로소 의장권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의장법은 '물품'이라는 것에 특별히 한정하여, 그것에 미를 표현한 것을 조건으로 그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타이프페이스의 경우, 주조 활자 등의 표면에 나타난 타이프페이스는 그 활자 등에 미감을 일으켜서 장식적, 미적 효과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즉 타이프페이스는 활자라는 물품에 어떤 미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

182) 제2조 1호.

183) 송영식 외 2인, 주31), 538면.

라 물품과는 독립적 존재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타이프페이스를 의장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3. 不正競争防止法에 의한 保護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⁸⁴⁾ 同法 제2조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와 관련되는 규정은 1호 가목의 상품주체혼동행위이다.¹⁸⁵⁾

동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그 상품주체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특정 영업자의 상품표지를 결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¹⁸⁶⁾ 타이프페이스를 同法에서 말하는 ‘상품’으로 보거나 ‘상품의 표지’로 본다면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이프페이스를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이프페이스는 인쇄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일지라도 인쇄되기 전에 그 매체로서 활자나 인쇄용 문자판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갖가지 디자인이 표현된다. 이 활자나 인쇄용 문자판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활자나 인쇄

184)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185) 제2조 1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해당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86)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1993), 81면.

용 문자판에 다양한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이 인쇄되고 그 출처도 명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인쇄물은 활자나 인쇄용 문자판이란 상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을 구성하는 문자에 특징적인 서체(타이프페이스)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서체는 다른 서체와 식별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활자나 인쇄용 문자판)에 대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이 동일한 활자나 인쇄용 문자판을 모방하여 표본을 만들거나 인쇄물을 발행하는 것은 상품에 타인의 상품표지(타이프페이스)를 사용하는 행위가 되어서 이에 대한 금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문자서체가 식별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같은 식별력 있는 서체는 활자나 인쇄용 문자판이란 상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쇄된 서체가 自他의 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곧 활자나 사식용 문자판의 혼동으로 당연히 연결된다. 따라서 활자나 사식용 문자판의 형태 외관(상품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을 보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타이프페이스 디자인을 보호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¹⁸⁷⁾ 그러나 이 경우에 보호받는 상품의 주체는 활자나 사식용 문자판의 제조, 판매자이므로 타이프페이스 제작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며 오로지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의 본질적인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에 타이프페이스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려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이란 적어도 유체물이어야 하므로 무체물인 서체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¹⁸⁸⁾ 그러나 근래에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개념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판결¹⁸⁹⁾이 일본에서 내려졌다. 서체가 무체물일지라도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187) “일본의 타이프페이스 보호동향”, 계간저작권(1994년, 여름호), 90면.

188) 한승헌, 주12), 265면.

189) 동경고등재판소 1993. 12. 24 판결, 本稿 제4장 3. (2) 3) (4) (ㄴ) 참고.

상의 보호를 인정한 이 판결은 타이프페이스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법해석은 아직 상품의 개념을 무체물에까지 확장시키지 않으며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법조문이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과 이러한 일본 판결의 태도가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품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立法的 考慮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법 중에서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완전히 적절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권법이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법의 해석상으로는 응용미술작품으로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더라도 타이프페이스의 특수성 때문에 저작권법적 보호가 곤란하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타이프페이스 보호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서체를 저작물의 예시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그 밖에는 문자독점을 초래할 우려와 독창적 부분 판단에 있어서의 난점을 해결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빈 협정 제7조에서는, 각 당사국은 원하는 바에 따라 타이프페이스의 독창성(originality)이나 신규성(novelty) 혹은 양자 모두를 보호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타이프페이스의 신규성과 독창성은 그것의 양식(style) 혹은 전체적인 모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격 있는 직능단체에 의해서 인정되는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저작권법에 마련한다면 타이프페이스에 있어서 독창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이에 의해 문자독점까지도 초래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와 분리할 수 없다는 타이프페이스의 특징 때문에 문자독점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 저작권법이 마련한 타이프페이스에 있어서의 저작권제한 규정¹⁹⁰⁾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 저작권법상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부여되는 제한은, 통상의 타이핑이나 프린팅 과정에서 타이프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이와 같이 통상적 사용을 위해 타이핑이나 프린팅 장비를 보유하고, 이렇게 제작된 인쇄물 또는 유인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공, 진열하거나 공중에 전시, 배포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용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존 법률의 난점을 피하고 타이프페이스 본질에 맞는 타당성 있는 보호를 추구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점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독일이 마련하고 있는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와 그 국제기타를 위한 빈 협정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의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도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190) CDPA 제54조.

제6장 結 論

타이프페이스는 그 개발에 부여된 창작자의 노력, 인쇄 문화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기술문명 발전에 따른 중요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미술작품이라는 점과 문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보호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판례는 모든 응용미술저작물에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법원은 타이프페이스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정도의 창작성을 지니지 못했으며, 문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문자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 보호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실용품과 관련된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해서 그 창작성이 순수미술작품보다 반드시 부족하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창작성이 실용적인 부분과 분리, 독립되어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조건을 우리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미국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상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를 포함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는 보다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타이프페이스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으로는 “타이프페이스의 保護 및 그 國際寄託에 관한 빈 協定”이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과 프랑스만이 비준하고 있어 5개국의 비준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아직 발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프페이스 보호방법도 통일적,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법조문상 타이프페이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의 취지에 따라 “타이프페이스의 보호와 그 국제기탁을 위한 빈 협정에 관한 법

를”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응용미술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분리가능하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응용미술작품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미술공예품만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타이프페이스를 보호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이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해석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넓은 보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타이프페이스를 저작권법 이외에 의장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려는 노력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장법의 ‘물품’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개념에 따를 때 이를 통한 보호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존 저작권법을 좀더 확장적으로 해석하거나 독일에서와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타이프페이스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 협정”에서 마련하고 있는 직능 단체 규정과 영국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를 통해, 타이프페이스 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야기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타이프페이스 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I. 國內文獻

單行本

- 곽대용 外 7人, 「디자인 대사전」, 승례문, 1994.
- 김두식 (編), 「전자출판론 I」, 타래, 1993.
- 김진평 外, 「한글 글자꼴 기초 연구」, 한국 출판연구소, 1990.
- 박대순 (編), 「현대디자인용어사전」, 디자인오피스, 1994.
- 宋永植 外 2人, 「知的所有權法」, 育法社, 1994.
- 宋永植 · 李相理, 「知的財産法」, 세창출판사, 1996.
- 신우식 (編), 「신문가로짜기」, 한국언론연구원, 1989.
- 이기성, 「전자출판」, 영진출판사, 1988.
- 李基秀 外 6人, 「知的財産權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 李相理,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세창출판사, 1995.
- 張仁淑, 「著作權法原論」, 寶晉齋出版社, 1989.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編), 「영국저작권법」, 1990.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編), 「저작권 용어해설」, 1988.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編), 「저작권에 관한 외국 판례선(1)」, 1988.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編), 「저작권에 관한 외국 판례선(2)」, 1989.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編), 「한국저작권 판례집」, 1990.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編), 「한국저작권 판례집(2)」, 1994.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編), 「독일·일본저작권법」, 1992.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編), 「프랑스·캐나다저작권법」, 1993.
-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타이프페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1.
- 丁相朝 (編), 「知的財産權法講義」, 弘文社, 1997.
- 鄭浩烈, 「不正競爭防止法論」, 三知院, 1993.
- 韓勝憲, 「著作權의 法制와 實務」, 三民社, 1988.
- 韓勝憲,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출판, 1994.
- 許燾成, 「베른協約逐條概說」, 一信書籍, 1994.
- 許燾成, 「新著作權法逐條解說」, 汎友社, 1988.
- 黃迪仁 外 2人, 「著作權法」, 法文社, 1988.

論文·其他

- 김동진, “타이프페이스의 法的 保護에 관한 小考”, 辨試研究, 1996. 3.
- 김성중, “타이프페이스의 法的 保護論”, 계간저작권, 1995, 가을호.
- 김정술, “저작권보호의 세계적 추세” 계간저작권 제3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8. 10.
- 김종윤, “미국에서의 산업디자인 보호”, 특허문화, 1993, 1/2.
- 김진희,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의 절차와 효력”, 계간저작권,
1994, 가을호.
- 동아일보, “한글티셔츠 글자꼴 다양화 아쉽다”, 1993. 8. 21.
- 박문석, “미술저작물과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비교적 고찰 및 미술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 계간저작권 제10호, 1990. 6.

- 박성호, “글자꼴 저작권 불인정 판결에 할 말 많다”, 출판저널, 1994. 5.
- 박효미, “글자꼴 ‘법적 보호’ 목소리 높다”, 월간 지적재산, 1994. 9.
- 월간디자인, “한글타입페이스 연구 어디까지 왔나?”, 디자인하우스,
1989. 10.
- 월간디자인, 임순범, “글자꼴 설계를 위한 컴퓨터의 활용 범위 및 방향”,
디자인하우스, 1989. 10.
- 이상정, “産業디자인의 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이상정, “응용미술의 보호”, 계간저작권, 1995, 여름호.
- “일본의 타이프페이스 보호동향”, 계간저작권, 1994, 여름호.
- 장인숙,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 저작권학회보, 1990. 5. 20.
- 정상조, “영국 저작권법하에서의 산업디자인 보호”, 계간저작권, 1995, 봄호.
- 정상조, “영국에서의 저작인접권”, 계간저작권, 1995, 여름호.
- 최정희, “캐릭터保護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0.
- 한승헌, “Typeface의 보호와 저작권”, 출판연구, 1990. 3.
- 전자신문, 1995. 7. 26. 1994. 11. 10. 1994. 8. 31. 1994. 7. 21.

II . 外國文獻

單行本

- A. Lucas & H.-J. Lucas, *TRAITÉ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 ARTISTIQUE*, Litec, 1994.
- Chisum Jacobs, *Understan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Matthew Bender & Co., Inc, 1995.
- Mer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Matthew Bender, 1986.
- Ralph S. Brown, Robert C. Denicola, *Copyright*, Foundation Press, 1985.
- W. 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Sweet & Maxwell, 1996.
- 牛木理一, 「意匠法の研究」, 發明協會, 1994.
- 半田正夫, 「轉機にさしかかった著作権制度」, 一粒社, 1994.

論文・其他

- Andre Françon, *The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Copyright Deposit*, COPYRIGHT, May, 1976.
- Christoper P. Busset, *Copyright law: A Review of the "Separability Test" and a Proposal For New Design Protection*, 10 Rutgers Computer & Tech. L.J., 1984.
- Diane W. Savage; Douglas K. Brots, *The Copyright status of typeface software*, v.6 Computer Lawyer, October '89

Edward Gottschall, *The state of the Art in Typeface Design Protection*,
Visible Language, v.19, No1, 1985.

Phillip W. Synder, *Typeface designs after the desktop revolution: a new
case for legal protection*, v.16 Colombia-VLA Journal of Law &
the Arts, Fall '91

Terrence J. Carroll, *Protection for Typeface Designes: A Copyright
Proposals*, Computer & High Tech. L.J., 1994.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Typefaces

Hahn, Jee-Young

A creator produces typefaces spending time, efforts, and expense. To pay the creator for his or her efforts and develop the culture of typography, typefaces should be legally protected. There are some obstacles, however, to protecting typefaces. Since typefaces are universally used and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letter once they are created, the unrestricted legal protection of typefaces may result in the monopoly of the letter.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ejected the protection of typefaces under the Copyright Act("the Act"). Relying on U.S. copyright law,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artistic and creative aspect of typefaces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practical aspect of typefaces, and typefaces are not a literary or artistic work protected under the Act. Under U.S. copyright law, however, the applied art should be independently separated in order to be protected;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introduce U.S. legal theory to Korea's copyright law system without modifications. Therefore, unlike in the U.S., typefaces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Act because the Act regards the applied art as a literary work.

The Vienna Agreement was drafted to protect typefaces internationally, but it has not come into force yet. As a result, each country has its own way to protect typefaces: some countries protect typefaces by way of copyright law or special legislation; and other countries protect typefaces under antitrust law or design law. Korea has difficulty in protecting typefaces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the UCPA") or the Design Act. The UCPA involves 'commodities', and the Design Act involves 'goods', but typefaces cannot be considered as commodities or goods. Therefore, I concluded that typefaces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Act in Korea.

Keywords : typeface, the Vienna Agreement, industrial design, applied art.